

우리나라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爲한 稅務行政
의 問題 矣에 關한 研究

—— 稅務行政이 企業經營에 미치는 影響을 中心으로 ——

指導 李圭恒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67年 2月 日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卞 漢 燮

謝 辭

이 論文이 完成되기까지 直接 指導해주신 李 圭 洹 教授님, 宋 以 求 教授님께 깊은 感謝를 드리며 恒常 研究活動을 들보아주신 여러 教授님들께 또한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本 論文 作成에 있어서 資料蒐集에 協助하여주신 財務部 稅 制局 및, 國稅廳의 關係者 여러분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며 淺學 非才인 本人의 論文이 우리나라의 企業人이나 稅務人에게 多少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次 例

I. 緒 論	1
A. 概 要	1
B. 研究範圍의 方法	6
II. 우리나라 稅務行政의 現況과 分析	9
A. 企業經營과 租稅制度	9
1. 우리나라의 稅制	9
2. 企業經營에 特殊關係가 있는 租稅	12
3. 法人 稅	14
4. 企業會計와 稅務會計	25
B. 企業經營과 稅務調査	35
1. 法人 稅調査	36
2. 稅務査察	49
III. 問題點의 規定	57
A. 制度에 關한 問題點	57
1. 法人實在說稅制의 不合理性	57
2. 法人稅率이 너무 높다	59
3. 加算稅制度의 不合理性	59

4. 減免稅制度의 不合理性	61
5. 稅務會計의 不合理性	62
6. 綠色申告制度의 不合理性	63
B. 稅務調査에 關한 問題矣	64
1. 加別查察選定對象基準의 不合理性	64
2. 稅務調査方法의 不合理性	68
3. 稅務調査를 統制하는 組織的이며 制度的인 管理制度의 不備	71
4. 稅務調査의 重複性	72

IV. 稅務行政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方向 — 76

A. 法人稅課稅制度의 改善	77
1. 法人擬制說稅制互의 轉換	77
2. 利率의 引下와 調整	78
3. 加算稅率의 引下와 調整	81
4. 投資控除制度의 新設	84
5. 外國稅額控除制度의 新設	85
6. 稅務會計上 總益金範圍의 縮少	86
7. 稅務會計上 總損金範圍의 擴大	87
8. 綠色申告制度의 立法化	93
B. 稅務查察運營의 改善	94

C. 稅務調查의 科學化 ————— 96

1. 損益分岐點에 依한 稅務調查의 申告所得
金額의 統制制度確立 ————— 101

2. 工場活動의 生産性에 依한 稅務調查의
統制制度確立 ————— 104

3. 經營分析比率에 依한 統制實施 ————— 106

V. 結 論 ————— 109

圖 表 目 次

第 I-1 表	G N P 對 應 租稅負擔率趨勢	——	4
第 I-2 表	內國稅增加率及 法人稅增加率表	——	5
第 I-3 表	歲入豫算의 內國稅依存度表	——	6
第 II-1 表	우리나라 租稅體系表	——	11
第 II-2 表	法人稅調查成績分析表	——	47
第 II-3 表	稅務查察成績分析表	——	56
第 IV-1 表	減價償却資產耐用年數比較表	——	90
第 IV-2 表	損益分歧及調查表	——	102
第 IV-3 表	純利益變動原因分析表	——	103
第 IV-4 表	生產性調查表	——	105
第 IV-5 表	收益狀態調查表	——	107
第 V-1 表	財政安定計劃執行成績表	——	110
第 V-2 表	物價指數表	——	110

A B S T R A C T

1

A STUDY ON ISSUES OF KOREAN TAX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OF RATIONALIZING MANAGEMENT OF BUSINESS UNDERTAKINGS

-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Influences upon Management
of Business Undertakings by the Tax Administration -

By HAN SUP BYUN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sis:

For the purpose of persuing stable growth of national economy, the Government has recently carried out stronger stability programs of finance and monetary circulation, and there-by to contribute towards putting a curb on monetary expansion and contriving to raise fund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ubstituting as well for annually dwindling foreign aid, and also towards meeting with increased annual expenditures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dedicated to expand tax revenue especially with various internal taxation programs.

The financial and monetary programs for stability and there-on expansion policy of tax revenue have greatly influenced upon management of business undertakings. Especially since establishment of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on March 3rd, 1966, the tax revenue expansion policy has been watched with a very keen interes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issues of tax revenue expansion policy which is carried out by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n line with rationalization of business management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and finally to seek improvement and/or corrective ways for better execution of the said policy.

The Scope of Study and Issues resulted from analysing the present condition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administration of corporation tax levied on income of the corporation constitutes the backbone of the modern tax administration and further it has the first-hand relationship to management of business undertakings, the writer of this thesis has set as the scope of study the corporation tax administration. Through analysing the present

structural system of corporation tax administration and its executive ways as well, the followings have been discovered to be issues:

A. Structural System of the Corporation Tax Administration:

1. Irrational characters of real entity theory.
2. High corporation tax rate.
3. Irrational penalty tax system.
4. Irrational tax exemption system.
5. Irrational tax accounting.
6. Irrational characters of "Green Tax Returns" system.

B. Tax Audit and Inspection:

1. Irrational criteria for selection of firms to be individually inspected.
2. Irrational tax examination method.
3. Inefficient management of controlling system for the controlling of tax audit and inspection.
4. The over-lap of tax audit and inspection.

The Schemes for the Betterment of the Tax Administration:

The schemes for the betterment of issues above pointed out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system;

1. To change the present system to that based on fiction theory.
2. To reduce or coordinate the rates.
3. To reduce or coordinate penalty tax rates.
4. To introduce investment credit system.
5. To introduce foreign tax credit system.
6. To cut down the scope of total profits in tax accounting.
7. To expand the scope of total losses in tax accounting.
8.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Green Tax Returns" system.

Secondly, the management of tax inspection programs shall be improved.

Thirdly, for the purposes of scientific tax audit and inspection;

1. To introduce the controlling system for tax audit and inspection, and as well for taxable income returned, by breake-even-point.
2. To introduce the controlling system for tax audit and system by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activities at a plant.

3. To control the tax audit and inspection by the ratio of managerial analysis.

The above mentioned schemes for the betterment of tax administration are the summary of the thesis and hereby substituted for as the conclusion.

I. 緒 論

A. 概 要

企業의 所得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租稅가 企業의 經營進路를 策定함에 있어서 重要な 要因이 됨은 贅言을 不要하는 바이나 오늘날과 같이 그 重大性이 深刻하게 論議된 적도 일찍이 없었다. 이와 같은 現狀은 政府의 繼續的인 增稅政策에 起因되며 政府의 增稅政策의 具體的인 內容을 보면 첫째, 國民의 租稅負擔率이 1964年度 7.8%, 1965年度 9.0%인데, 1966년에는 11.6%로 增加했음을 들 수 있고, 둘째, 內國稅의 徵收는 當初 國稅庁에서 700 億원을 目標로 하였으나 國會에서 豫算審議權의 侵害과는 關係가 생기 第二次 追更에서 1964年 280 億원, 1965年度 418 億원이었던 것을 1965年度에 666 億원으로 策定함으로써 1965年度에 比하여 59%의 增稅方針과,

셋째, 企業稅中 가장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는

法人稅의 경우 1964年度 41억원, 1965年度 57억원이었던 것을 1966年度에는 96억원을徵收함으로써 1965年度에 비하여 68%를增收(内國稅 700억원 目標에 있어서는 78%增收였음) 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参照 第I-1表 第I-2表 第I-3表)

그런데 前記와 같은 目標로 하는 稅務當局의 稅收増大策은 마치 稅金攻勢를 방불케 하고 있다. 脫稅의 防止, 課稅標準의 現實化, 稅源究極, 稅率引上策의 摸索, 稅務查察의 強化等を 통하여 最大限의 稅收入을 圖謀하고 있으니 稅法의 諸規定에 따라 稅負擔을 하지 않았던 많은 企業으로서는 무거운 稅負擔을 짊어지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제대로 稅金을 내지 않은 德으로 겨우 維持되어 오던 많은 企業에게는 견딜 수 없는 威脅으로 나타나 企業의 經營全般에 걸쳐 根本적인 再檢討가 加해지지 않으면 아니될 段階에 이르는 것이다.

한편 稅務行政當局이 現在의 稅制를 그대로 밀

고 나간다면 적지 않은 企業이 側産을 避키 못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리고 現稅制는 지금까지 타당화되다시피한 脫稅의 恣行, 課稅標準의 非現實的인 適用, 稅源의 隱蔽, 稅務行政의 亂脈을 前提로 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稅法대로 課稅하지 않을 것을 前提로 하여 미리 높게 釐定한 稅率에 對한 稅制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새삼스러이 稅法대로 徹底한 課稅를 한다고 하면 不合理하거나 企業側에 無理한 稅負擔을 要求하는 結果가 招來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現行稅制를 지금처럼 말고 나간다면 矯角殺牛格의 稅制가 될 수도 있고 稅收増大의 主要目的의 하나인 經濟開發財源擡出의 意義를 흐리게 할 우려도 없지 않다. 稅收増大가 비록 經濟開發을 통한 財源擡出의 한 方法이라고는 하지만 이 때문에 民間企業이 萎縮된다면 그 意義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政府의 稅收増大策에 對應하는 稅制가 公正하게 運營된다는 前提下에 合理的인 稅

務行政의 改善이 이루어 져야 할 方向을 提示하
려는 것이 本論文의 目的이다.

第 I-1 表 GNP에 對한 租稅負擔率趨勢

(單位: 億圓)

區 分 \ 年 度	61 實 績	62 實 績	63 實 績	64 實 績	65 實 績	66 予 算
G N P	2,933.5	3,386.0	4,715.3	6,667.2	7,774.0	7,082.8
內 國 稅	176.5	213.2	243.7	289.1	412.8	665.6
內 國 稅 負 担 率	6.0%	6.2%	5.2%	4.3%	5.4%	7.3%
關 稅	53.0	62.5	67.1	85.1	128.5	166.4
專 売 益 金	26.4	48.1	56.1	59.4	44.7	81.7
地 方 稅	25.8	51.8	73.5	87.3	112.9	142.4
租稅負擔總額	281.7	381.6	440.4	520.9	703.9	1,056.1
租稅負擔率	9.6%	11.2%	9.3%	7.8%	9.0%	11.1%

財務部稅制局: 1966年度 國政監査 政
策質疑答辨資料, P. 5, 1966

內國稅增加率及法人稅增加率表

第I-2表

(單位: 億元)

區 別	61	62	63	64	65	66	66
內 國 稅	(實績)	(實績)	(實績)	(實績)	(實績)	(預算)	(計劃)
稅 收 額	176.5	213.2	243.7	289.1	417.8	665.6	700
增 加 率	100%	121	138	164	236	377	397
前年度對比 增加額		36.7	36.5	45.4	128.7	247.8	282.2
前年對比 增加率		21	14	19	44	59	68
法 人 稅							
稅 收 額	12.1	20.1	32.0	41.1	57.0	96.1	101.8
增 加 率	100%	118	175	240	333	562	595
前年對比 增加額		3.0	9.9	11.1	15.9	39.1	44.8
前年對比 增加率	%	18	49	37	38	68	78

財務部稅制局：1966年度國政監查政策質疑答辨資料

P 54, 1966

歳入豫算の 内國税 依存度表

第 I - 3 表

(單位: 億 圓)

年度 區分	61		62		63		64		65		66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実績)		(実績)		(実績)		(実績)		(実績)		(豫算)	
歳入規模	613.5	100%	788.7	100	259.2	100	793.9	100	946.5	100	1442.1	
内國税	176.5	29.1	213.2	27.1	243.7	32.1	289.1	36.7	417.8	44.1	665.6	46.7
外國援助	2140.8	39.2	293.7	37.2	263.1	34.7	280.2	35.3	284.9	30.1	331	23.2

財務部税制局: 1966 年度 国政監査政策質疑答辨資料,

P 55. 1966

B. 研究範圍及 方法

租税 = 直接税及 間接税の 두가지로 크게 分類될 수 있고 또 直接税及 間接税는 各己 그 나라의 実定法에 따라 여러가지의 많은 税目

으로 構成되어 있음이 普通이다. 그리고 그와같은 많은 種類의 租稅가 間接的으로는 모두 企業經營에 關係가 있다고 하겠지 만 直接的으로 企業經營에 關係되고 있는 租稅는 그 나라의 租稅體系에 따른 具體적인 稅目에 따라, 或은 各 企業의 業種 또는 種目에 따라 各各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稅制를 土台로 하고 法人所得稅(法人稅)를 中心으로 한 稅務行政을 研究對象으로 採하였다. 特히 法人稅를 中心으로 한 稅務行政을 採한 것은 法人稅가 法人企業을 對象으로 하는 所得稅인 것이나 똑같은 理論이 個人企業을 對象으로 하는 個人所得稅(事業所得稅)에도 適用되는 것이기도 하고 法人所得稅는 原則적으로 他에 轉嫁를 시키지 않고 自己의 所得에서 支拂되어야 하는 稅金인 만큼 企業의 經營政策樹立에 있어 가장 重要的 意義를 지니기 때문이다.

本論文의 研究方法是 現今 政府가 稅收増大策으로 遂行하고 있는 稅務行政이 正席적인 企業經營을 萎靡시킬 수 있는 諸要因을 問題點으로 規定

하고 合理的인 企業의 經營樹立과 執行이 可能하도록 하기 爲한 稅務行政의 改善方向을 模索코치 하였다.

따라서 I章의 緒論에 이어 II章에서는 우리나라의 稅務行政에 關한 現況과 分析을, 그리고 III章에서는 現況分析에서 얻은 結果에 따라 問題點을 規定 하였으며, IV章에서는 問題解決을 爲한 改善策을 模索하였다. 그리고 以上の 內容을 總合적으로 要約하거나 附言해 들 몇가지 事項들은 結論에 包含시켰다.

Ⅱ 우리나라 稅務行政의 現況 과 分析.

A. 企業經營과 租稅制度.

1. 우리나라의 稅制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그 나라의 實情에 따라 여러가지 種類의 租稅가 租稅의 原則에 準하여 一定한 體系를 이루고 있으니 이것을 租稅體系 또는 稅制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稅制는 租稅의 課徵權者의 主體를 中心으로 하여 크게 國稅와 地方稅로 構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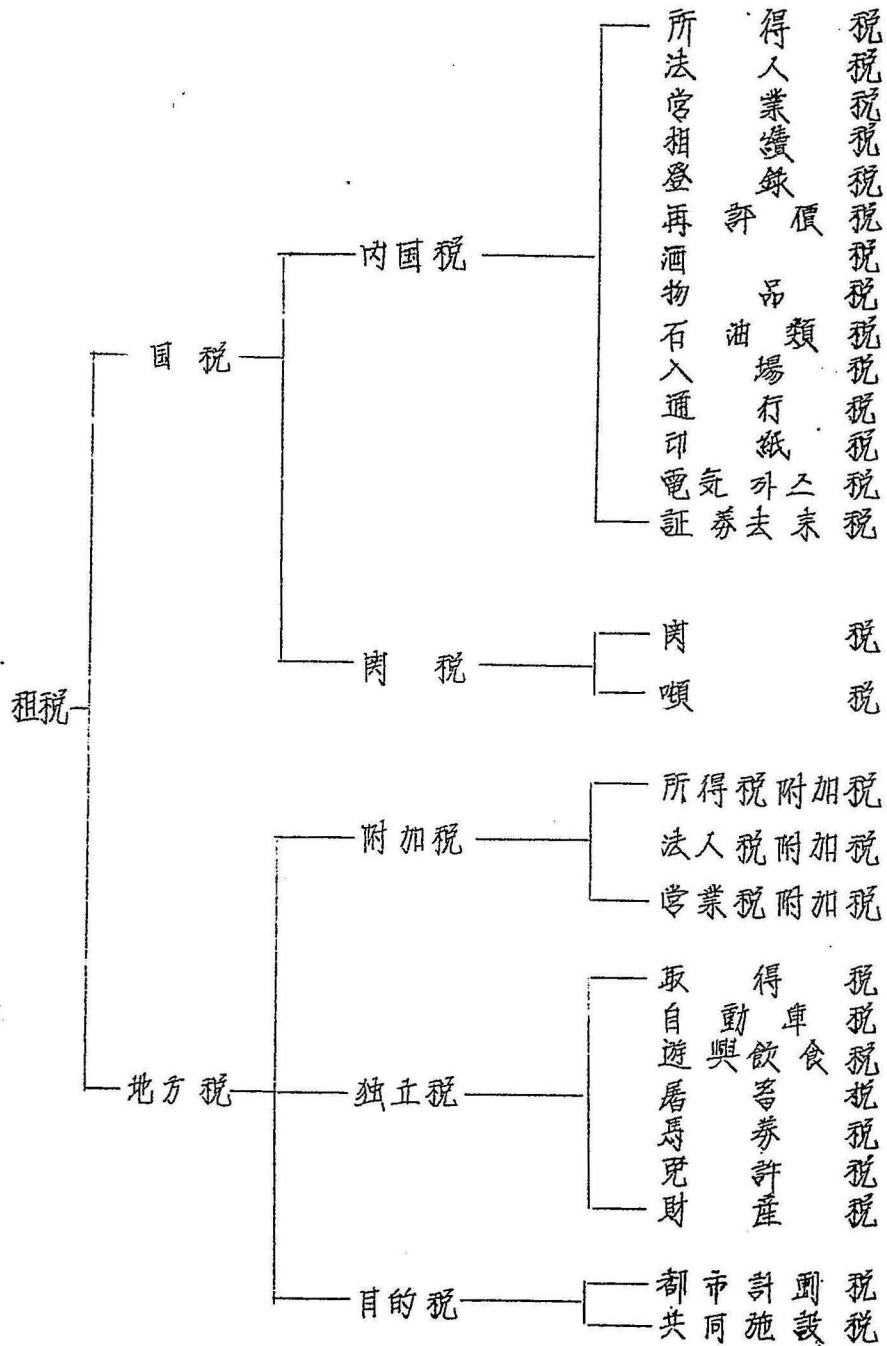
國稅는 다시 內國稅와 關稅로 나누어 지는데 物品이 國境을 通過할때에 課徵하는 것이 關稅이고 其他의 租稅는 全部 內國稅이다. 內國稅는 稅金을 負擔하는 者와 納付하는 者의 一致與否를 區別의 標準으로 해서 兩者가 같을 때는 直接稅라 하고 다를 때는 이를 間接稅라고 한다. 直接稅에 該當하는 稅目으로서는 所得稅, 法人稅, 相続

稅、營業稅、登錄稅、再評價稅가 있고 間接稅에 該當하는 稅目으로는 酒稅、物品稅、石油類稅、電氣料
 上稅、通行稅、入場稅、證券去來稅、印紙稅가 있다.
 地方稅는 그 課徵되는 性質에 따라 獨立稅와 附加稅
 與 目的稅로 나눌 수 있다. 獨立稅는 國稅
 와는 關係없이 課徵하는 租稅로서 農地稅、財産稅、
 遊興飲食稅、自動車稅、取得稅、馬券稅、屠畜稅、
 與 免許稅가 있으며, 附加稅는 國稅의 어느 一定
 한 比率相當額을 課徵하는 租稅로서 所得稅附加稅、
 法人稅附加稅 與 營業稅附加稅가 있다. 目的稅는
 特定한 目的의 經費에 充當하기 爲하여 課徵하는
 租稅로서 都市計劃稅와 共同施設稅가 있다.
 以上을 圖表로 보면 다음 第Ⅱ-1 表와 같다.

第Ⅱ-1 表

우리나라 租稅體系表

(1966. 11. 30.)



2. 企業經營에 特殊關係가 있는 租稅

우리나라의 租稅體系에 對하여는 앞서 要約한 바와 같거니와 이러한 諸稅들이 企業經營과 關係되는 程度는 그 稅目에 따라 各々 다르다. 即 어느 特定한 企業에는 關係를 맺고 있으나, 其外의 企業에는 關係가 없는 稅目, 或은 企業의 損益計算에 直接的으로 關係가 있는 稅目과 間接的으로 關係가 있는 稅目等의 例가 같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企業經營에 特殊關係가 있는

租稅라고 할 경우에는 어느 企業에도 直接的으로 損益計算에 關係되는 稅目を 말한다.

이러한 現狀에서 우리나라의 稅制를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即 企業損益에 對하여 課稅하는 租稅로서는 國稅에서 所得稅 法人稅, 營業稅, 地方稅에서 所得稅附加稅 法人稅附加稅, 營業稅附加稅가 있다. 其外에 有形固定資產을 所有하고 있는 企業에 있어서는 地方稅인 財産稅가 關係되고 있기는 하나 一般的으로는 企業經營에 가장 直接的으로 關係가 있는 것은 前者의 6個 稅目이라 할 수 있다.

企業經營과 特殊關係가 있는 前記 6種稅目
 (所得稅、法人稅、營業稅、所得稅附加稅、法人稅
 附加稅、營業稅附加稅) 이 企業을 個人企業과 法
 人企業으로 区分할 場合의 그 關係되는 程度를
 보면, 勿論 個人企業에는 所得稅、所得稅附加稅, 營
 業稅 및 營業稅附加稅가 關係되고 있다. 그러나,
 ① 所得稅附加稅의 課稅標準은 所得稅額이 되어
 있고 ② 營業稅(個人營業稅)의 課稅標準은 所得
 稅의 課稅標準의 算定基礎가 되는 收益(外形金額)
 이고 ③ 營業稅附加稅(個人營業稅附加稅)의 課稅
 標準은 바로 營業稅額이 되고 있어 個人企業의
 經營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問題가 되고 있는 租
 稅는 所得稅라 할 수 있다. 勿論, 法人企業의
 境遇에는 法人稅 法人稅附加稅 營業稅 營業稅附加
 稅가 問題된다. 여기에 있어서 法人稅라 함은 個
 人企業의 場合に 比할때 法人所得稅의 性質인 것
 이므로 個人企業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法人企業
 의 경우에도 가장 基本的으로 問題되고 있는 租
 稅는 法人稅라 할 수 있다.

앞에서 考察한 바를 다시 要約 하면 企業經營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으로 關係되고 있는 租稅는 所得稅와 法人稅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現代企業은 株式會社가 代表的인 企業形態이므로 여기서는 法人稅를 急주로 考察하려는 것이다.

2. 法人稅

우리나라의 法人稅는 日帝가 물리라고 大韓民國政府의 樹立後에 있었던 1949年의 全般的인 稅制改革에 있어서 舊所得稅令 (日帝時制度)에 規定되어 있었던 第一種所得稅를 分難하여 創設한 것이 그 始初가 된다. 그 以前의 法人企業에 課한 課稅體制를 볼것 같으면 法人의 所得에 課하여는 第一種所得稅를 資本에 課하여는 法人資本利子稅를 課稅하여 왔다. 그러나 元來 法人은 個人과 그 性質을 달리하여 個人의 경우와 같이 所得의 種類와 그 大小에 即應하여 課稅를 課할 必要가 없으므로 所得稅는 原則적으로 個人에 課하여서만 課稅하기로 하고 法人에 課하여는 그 本質에 立脚하여 獨自的 課稅體制를 採擇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理由로 1949年 11月 2日

法律 第 82 号로 法人稅法의 制定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稅法은 1960 年 까지 무려 11 次에 걸친 部分的인 稅法 改定을 거듭하여 온 結果, 稅法의 体系가 粗雜하고 理解하기 困難한 點이 許多하여 1961 年 12 月 8 日 當時의 革命政府에서 法律 第 823 号로 法体系上의 欠點을 根本적으로 是正함과 同時에 經濟實情에 符合하도록 從前의 法人稅法을 廢止하고 새로 法人稅法을 制定하여 1962 年 1 月 1 日부터 施行하게 되었는바, 이것이 오늘날 施行 되고 있는 法人稅法의 母體가 되어 其後 3 次의 改正을 거듭하면서 現在 施行 되고 있는 것이니 그 概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우리나라 法人稅의 概要

① 納稅義務 있는 法人企業

內國法人企業 (國內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을 말한다)은 國內에서 얻은 所得이거나 外國에서 發生한 所得이거나를 莫

論하고 그 所得全部에 對한 法人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外國法人企業(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 우리나라의 國內에 資産 또는 事業을 가진 法人을 말한다)은 國內에 있어서 所有하고 있는 資産 또는 事業經營에서 얻은 所得에 對한 法人稅 만을 納付할 義務가 있다.

② 課稅對象所得과 課稅期間 :

內國法人은 各事業年度 (企業의 決算期間에 該當한다.) 에서 생긴 所得과, 法人이 解散이나 合併을 함으로써 法人을 解体할 때 생기는 清算所得에 對하여 課稅된다. 外國法人은 清算所得에 對하여는 課稅되지 않고 各事業年度의 所得에 對하여서만 課稅된다.

內國, 法人과 外國法人에게 課稅되는 各事業年度의 所得에 對하여는 法人이 決算하는 決算期間마다 課稅되며, 內國法人에게만 課稅되는 清算所得은 法人이 解散이나 合併을 할 때 課稅되는 것이므로 法人의 存續期間中 課稅되는 最終的인 法人稅라고 할 수 있다.

③ 課稅標準

各事業年度の所得에 對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當該事業年度の 所得金額이 課稅標準額이 되며, 清算所得에 對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當該法人의 清算所得金額이 是 課稅標準額이 된다. 以上에 各事業年度の 所得金額은 當該事業年度の 總益金에서 總損金을 控除하는 方式으로 計算한다.

$$\text{各事業年度所得} = \text{總益金} - \text{總損金}$$

※ (参考 : 企業會計)

$$\text{當期純利益} = \text{收益} - \text{費用}$$

(이 部門은 다음에 稅務會計에서 具體적으로 分析될 것이다)

다음에 清算所得金額은 法人이 解散할때 殘餘財産의 額에서 出資金額과 積立金의 合計額을 控除한 金額에 依하고, 法人이 合併을 할 때는 合併法人으로 부터 받은 株式金額과 金錢의 總額에서 被合併法人의 拂入株式金額과 積立金의 合計額을 控除한 金額에 依하고 있다.

(解散 時 的 情 形)

清算所得 = 殘餘財產總額 - (出資金額 + 積立金)

(合併 時 的 情 形)

清算所得 = 合併法人으로 早 到 的 是 被 合併 法人 的 移 入
株式 金額 及 交付 金 株式 金額 及 積 立 金

④ 稅 率 及 扣 算 稅 :

基本稅率 ----- 現 行 法 人 稅 法 上 法 人 稅
의 稅 率 은 一 般 的 인 情 形 에 適 用 되 는 基 本 稅 率 及
다 各 別 說 明 書 株 式 公 賣 時 的 輕 減 稅 率 로 區 分 該
千 有 也 . 基 本 稅 率 은 各 各 同 樣 的 3 段 階 的 累
進 稅 率 로 設 定 有 也 .

所得金額	稅 率
1,000,000 圓 以下	20 %
1,000,000 圓 超 過	30 %
5,000,000 "	35 %

株 式 公 賣 時 的 輕 減 稅 率 ----- 1 利 益 稅 法
稅 政 策 上 公 開 法 人 會 費 成 本 及 為 此 1962 年

12月 28日의 法人稅法 改正에 新設된 것이나
只今까지 한번도 適用되는 實例이 없었다. 그 內容
은 株式會社를 公募發起 또는 增資한 法人에 對하여는
그 該當部分의 所得金額에 對하여 向後 50年 前
記한 基本稅率을 玄로 輕減한다는 것이다.

加算稅 ---- 法人稅法上 法人에게 賦與한
各樣 義務의 不履行에 對하여는 罰利金의 性質의
加算稅를 課稅하고 있다. 이것은 企業이 法人稅를
實地로 負擔하는 때 있어서 앞서서 說明한 法人稅의
基本稅率에 對지 甚히 重要性을 付與하고 있는 것이
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은 6個項目으로 構成되어
있다.

1. 所得金額申告 및 商業帳簿備置 記帳義務
不履行加算稅 ----- 其本稅額의 50%
또는 外形金額의 $\frac{3}{1000}$
2. 過少申告加算稅額 -----
---- 過少申告 所得金額에 該當하는 稅額의
50%
3. 政府決定加算稅 -----
認定決定을 할 때는 基本稅額의 10%

4. 自進申告納付不履行 加算税 -----
 自進申告納付하지 아니한 税額의 10%
5. 貸借対照表 및 損益計算書公告 義務 不履行
 加算税 -----
 基本税額의 20% 또는 外形金額의 $\frac{2}{1,000}$
6. 報告書提出不履行 및 不明 資料 加算税 ----
 提出하지 아니한 去來金額 또는 不明 資
 料 金額의 1%

다만 加算税을 課税하는 경우에 있어서 前記
 ①에 該當하는 “所得金額申告 및 商業賬簿備置記錄
 義務 不履行 加算税”을 課하는 때는 前記 ②호
 (進少申告加算税) 의 ③호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
 書 公告義務不履行加算税) 의 加算税는 課하지 않
 기로 되어 있다.

③ 減免稅制度 :

多樣的인 減免稅制度 ----- 우리 나라
 의 法人稅法에서는 相當의 範圍에서 産業의 育成
 策으로 法人稅를 免稅 또는 輕減하는 減免稅制度
 를 採擇하고 있는 바 그 概要는 다음과 같다.

区	分	減	免	率	備	考
---	---	---	---	---	---	---

1. 外国航行所得

免稅

外国航海所得

全額免稅

外国航空所得

全額免稅

2. 輕減免事象所得

4年間全額免

増資に依る

稅

増加所得に

対し1年間 $\frac{2}{3}$

減るに

輕減

1対し1年間

 $\frac{1}{3}$ 輕減

3. 輕減免事象所得

2年間全額免稅

対し1年間 $\frac{2}{3}$

輕減

1対し1年間

 $\frac{1}{3}$ 輕減

4. 外貨獲得所得輕減

減

区 分	減 免 率	備 考
輸 出	50%	
軍納用役	50%	
觀光事業	50%	
保稅加工	50%	
二. 災害減免	被害比率	

다만 法人의 所得金額을 決定할 時 法人이 備하고 있는 帳簿가 不誠實하여 認定決定을 할 수 없는 前述한 減免稅惠擇은 관지 不한다
 主減免事業의 項目 ----- 主減免事業으로는 다음과 같은 10個 項目의 事業으로 限定하고 있다.

1. 鋼船船의 製造事業
2. 鑄鉄 鑄鋼과 鍛鋼의 事業
3. 化學肥料과 原動機의 製造事業
4. 發電事業
5. 金의 採掘事業
6. 砂金의 採取事業

7. 石炭의 採掘事業

8. 門塋事業

9. 于拓事業

10. 埋立事業

輕減免事業의 種目 ----- 輕減免事業
의 種目은 다음과 같다.

1. 銀, 銅, 鉛, 鋅, 鐵, 안티모니, 硫化鐵,
니켈, 망강, 핀그스텐과, 모리부엥의 採掘
事業.
2. 矽鐵과 土炭의 採取事業
3. 스트로우 판트 製造事業
4. 도루마린 製造事業
5. 비스코스人絹糸 아세테이트 人絹糸와
나이론糸의 製造事業.
6. 톱크리트에 依한 電柱 枕木, 杭木과
과일의 製造事業
7. 自動車와 自動車附屬品의 製造事業.
8. 有軌車와 有軌車附屬品의 製造事業
9. 紡織機械과 加工機械의 製造事業
10. 電氣計器와 電動機의 製造事業

11. 工作機械의 製造事業
12. 酪農加工業과 水産加工業

③ 報告書提出 ;

法人은 物品의 去來 其他 事業에 關한 去來內容에 關한 報告書를 翌月末日 까지 所管稅務署에 提出하도록 하여 課稅資料로 活用 하고 있다.

ㄱ. 우리나라 法人稅의 特色

法人稅에 關한 母法이 되는 法人稅法의 概要에 對하여는 이미 앞에서 分析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企業經營面에서 우리나라 法人稅法의 特色을 살펴 보면,

첫째, 우리나라 法人稅는 徹底的한 法人實在說에 立脚하고 있어 企業所得에 對하여 二重課稅를 하고 있으며,

둘째, 法人이 脫漏시킨 所得에 對하여는 加算稅等으로 廣愼的이며 苛酷한 課稅를 하고 있으며,

셋째, 各 法人이 所管稅務署에 提出한 報告書(商去來의 資料)는 課稅資料로서 法人이 申告

한 所得金額의 檢證資料로서 活用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4. 企業會計와 稅務會計

a.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關係

稅務會計라는 것이 무엇이나에 對하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確然한 定義가 내
려져 있지 아니한 것 같다. 이는 稅務會計原則이
라는 것이 具體的으로 體系化되어 있지 않은 데
基因하나 近代租稅中 가장 代表的인 것은 法人稅
라 할 수 있으므로 一般的으로 稅務會計라 함은
法人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法人의 所得金額을 計
算하고 處理하는 會計라고 생각 되어 진다.

法人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各事業年度의 所得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各事業年度(會計期間)의
總益金에서 總損金을 控除하는 方式에 依하여 計
算된다. 이것은 다시 企業會計에 있어서 当期純利
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当該會計期間의 收益에서
費用을 控除하는 計算內容과 類似한 것이나 兩者
는 會計目的의 差異로 因하여 반드시 一致하지

이 나란 것이 그 特色으로 되어 있다.

即 企業會計는 投資家, 顧客, 従業員等を 爲하여 財務機能이나 經營管理의 目的으로 企業會計原則에 依하여 計算處理 되나 稅務會計는 그 나라의 實情에 따라 稅收確保를 爲한 財政政策의 目的, 産業의 育成保護를 爲한 經濟政策의 目的 및 公平課稅를 爲한 社會政策의 目的 등을 實現 하려는 즉 그 뜻이 있어 一定한 稅務會計原則이라는 것이 樹立되어 있지 않고 있다.

△ 稅務會計의 內容

各事業年度의 所得은 그 事業年度의 總益金에서 總損金을 控除한 金額에 依하고 있으므로 稅務會計는 總益金과 總損金의 認識으로 計算出發되고 있다.

總益金 ;

稅務會計上, 總益金은 資本의 投入以外에 純資産增加의 原因이 되는 모든 事實을 말하며 規定하고 있으며 그 一般的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財貨, 用役, 帶兩等의 換取에서 생기는

各種 營業의 販賣金額, 收入金額, 請買金額 及 保
險料 金額

- ② 資產의 讓渡金額
- ③ 資產에 對한 貸貸料
- ④ 資產의 評價로 因하여 生기는 増差額
- ⑤ 無償으로 받은 資產 但 移越缺損金의
補填에 充當된 部分은 除外한다.
- ⑥ 債務의 免除 또는 消滅로 因하여 생
기는 負債의 減少額 但 債務의 免除額으
로써 移越缺損金의 補填에 充當된 部分
은 除外한다.
- ⑦ 利益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 損金으로
처置計上한 積立金
- ⑧ 簡記以外의 利益으로서 그 法人에 歸屬
되거나 歸屬될 金額等이다

總損金 :

總損金은 資本의 還拂 또는 利益의 處分以
外에 純資產減少의 原因이 될 모든 事實을 말한
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一般的인 內容을 包摂
하고 있다.

- ① 讓渡한 資産의 讓渡當時의 帳簿価額.
- ② 販賣한 商品 또는 製品에 對한 原料
의 買入価額과 附帶費用
- ③ 人件費
- ④ 固定資産에 對한 修繕費.
- ⑤ 固定資産에 對한 減價償却費
- ⑥ 資産에 對한 賃借料
- ⑦ 借入金에 對한 利子
- ⑧ 創立費用
- ⑨ 貸倒金
- ⑩ 在庫資産의 評價로 因하여 생기는 減差
額.
- ⑪ 諸稅公課金 但 法の 規定에 依하여 損
金에 算出하지 아니하는 것을 除外한
다.
- ⑫ 다음에 掲記하는 金額.

① 保險業을 經營하는 法人의 保險契約으
로 因한 配當金 또는 配當準備金 但 配當準備金
에 對하여는 保險約款上의 確定義務에 基因하여
積立한 것에 限한다.

⑭ 銀行法에 依한 定期積金의 結付補填準備金 또는 이러한 性質이 있는 準備金 但 法令에 規定하는 限度內로서 그 事業年度에 積立한 것에 限한다.

⑮ 保險業에 있어서의 責任準備金과 特別準備金 但 法令에 規定하는 限度內로서 그 事業年度에 積立한 것에 限한다.

⑯ 商法의 規定에 依하여 配當하는 股息利息 但 利益處分에 依하여 配當한 것은 除外한다.

⑰ 前 各號以外의 損失로서 法人에 歸屬하거나 歸屬할 金額.

C. 稅務會計의 特殊性의 類型

앞에서도 言及한바 있거니와 稅務會計와 企業會計는 다 같이 決算會計로서 期間的 損益의 確定이라는 點에 있어서는 同一한 計算的 基盤위에 立脚하고 있으나 다만 그 會計目的의 差異에서 오는 計算節次의 差異가 兩會計를 區別케 하고 있다.

그 되므로 稅務會計는 企業會計原則에 準하여 計

算하는 企業會計 即, 企業의 財務諸表에 對해서 이를 稅法이 要求하는 法에 따라서 修正 乃至 調整을 함으로써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課題가 稅務會計에 있어서 가장 重要な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를 中心으로 해서 前記한 法과 같은 修正 乃至 調整計算을 하는 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類型으로 集約 되고 있다.

첫째, 企業會計의 原則에 對하 企業에서는 益金으로 計上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稅務會計에서는 益金에 算入하는 경우 (益金算入)

둘째, 前者의 경우와는 反對로 企業에서는 当期純利益計算에 있어 收益에 計上하였는 데도 不拘하고 稅務會計上の 所得金額 計算에 있어서는 總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경우 (益金不算入)

셋째, 企業에서는 当期의 費用으로 計上하지 아니한 것이나 稅務會計에서는 스스로 当期損金에 計上하는 경우 (損金算入).

넷째, 稅務會計의 機能에 있어 가장 廣範圍

하고 重要な 核心을 이루고 있는 部分으로서 企業が 自己計算上 当期의 費用으로 計上 하였으나 稅務會計에서는 이를 損金으로 取扱하지 않는 경우 (損金 不算入) 等이다.

d. 稅務會計가 지니는 特殊性의 具體的인 内容.

稅務會計의 特殊性의 類型에는 4가지의 類型이 있음을 보았다. 다음에는 그 具體的인 事項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1) 益金算入 項目

① 1965. 12. 30 法律第 1,720 號로 法人稅法을 改正하여 「株式의 額面超過額, 減資差益, 및 合併差金 (資産의 評價增으로 因하여 생기는 差益金을 除外 한다)」 등은 總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하기로 規定함으로써 益金不算入 項目이 되었고, 資本的 支出을 目的으로 하는 國庫補助金과 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依한 再評價 積立金은 従来부터 傳統的으로 益金不算入 項目으로

되어 왔으나 그 이외의 資本剩餘金 即 國庫資産
評價差益, 債務免除益, 工事買入金, 無償贈與利益(担
移越跌損金の 補填에 充當된 部分은 除外함), 保
險差益, 및 資産의 評價增으로 因하여 생긴 合併
差益等은 稅務會計에서 當期の 總益金에 算入 되어
課税對象이 되고 있다.

② 企業會計에서는 當期純利益의 計算에
있어 收益에 計上 하지 아니하고 剩餘金計算書에
서 處理되는 科目인 國庫資産의 賣却益 및 賣却
金の 還入額等 支出된 損金이 還入된 것도 當期
所得金額計算에 있어 總益金에 算入 하고 있다.

(2) 益金 不算入 項目

다음의 各 項目 들은 稅務會計의 原則
(純財産増加税) 上으로는 當然히 當期の 總益金에
該當되는 것이나 租税政策上으로 特別히 非課税所得
으로 規定하여 總益金에 算入 하지 아니하고 있다.

① 國債利子 地方債利子

② 産業金融債券利子, 農業金融債券利子,
法律에 依하여 政府가 保證하는 債

収入 利子

- ③ 郵便貯金의 利子, 預金利子, 積金의 利子, 但 支拂準備金의 利子는 除外된다.
- ④ 貯蓄獎勵의 目的으로 金融機關이 支給하는 當該金.
- ⑤ 證券交易所에 株式上場을 하는 國內法人으로 株式를 買는 配當金.
- ⑥ 株式配當保障에 關한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會社로 株式를 買는 配當金.

(3) 損金算入 項目

企業會計에 있어서는 當期의 費用項目에 算入될 수 있는 것이나 稅務會計에 있어서는 長期的인 課稅의 公平性을 取한다는 見地에서 2年內의 移越缺損金은 當期의 所得金額計算上 總損金에 算入하고 있다.

(4) 損金不算入 項目

- ① 法人稅, 法人稅附加稅, 罰金과 料料,

滯納加算金、滯納処分費、徴収業務費로서 納付税 税額(加算税額包含)、利益処分費 使用人 出資者가 아닌 在員包含)에 對한 賞與金, 出資者의 在員에게 支給된 賞與金, 其 充當金으로 對替計上 된 損金 等에 對하여 稅務會計에서는 總損金에 算入하지 않고 있다.

② 非指定寄附金과 接待費의 合計額이 法人稅法上 認定되는 限度額을 超過하는 金額과 減損償却額이 法人稅法上 認定되는 限度額을 超過하는 金額은 總損金에 算入하지 않고 있다.

③ 貸附金은 法人稅法에 그 範圍를 嚴格히 規定하고 그 範圍를 벗어난 것은 損金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④ 耐用年數를 延長시키거나 當該 固定資産의 価値를 現實적으로 增加시키는 修繕費와 建設資金에 對한 支拂利子는 이를 資本的 支出로 看做하고 있다.

⑤ 商工會議所會費와 同業組合費(또는 協會費)中 特別會費는 非指定寄附金으로 看做하고 있다.

㉔ 査定率 또는 搬出率의 未納消費稅와 當該事業年度分の 未納營業稅를 除外한 그 以外의 未納租稅는 當該事業年度의 損金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㉕ 直接業務에 關係이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経費는 所得金額計算上 損金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㉖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庁長은 法人의 行爲 또는 計算이 租稅의 負擔을 不當히 減少하지 한다고 認定할때는 그 法人의 行爲 또는 計算에 不備하고 一方의 으로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는 权限(不當行爲新算否認)이 留保되어 있다.

B. 企業經營과 稅務調査

稅務調査는 主로 賦課調査와 稅務査察로 区分되고 있다.

賦課調査는 法人稅의 경우는 法人稅調査, 營業稅의 경우는 營業稅調査 等으로 呼稱되는 것으로서 그 調査의 結果는 課稅標準을 決定하고 그에 따라 法人稅額을 確定하는데 主된다.

이에 반하여 稅務査察은 賦課調査를 기하여 法人稅 賦課決定行爲가 完了되고 또한 法人稅 通脫犯의 既遂時期(納期終了)가 지난 後에 通脫한 法人稅를 調査 摘發하여 그 通脫한 法人稅를 追徵함과 同時에 租稅犯處罰法에 依하여 處罰外지를 하는 데 그 特色이 있다.

그터므로 여기서는 稅務調査를 法人稅 調査와 稅務査察로 区分하여 다음에 分析 하고자 한다.

1. 法人稅 調査

a. 法人稅 課稅方式

“法人稅法 第 28 條의 規定에 依하면 法人의 所得金額은 同法 第 27 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에 依하여 決定된다. 다만 申告가 없거나 申告內容이 不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法에 依하여 政府의 調査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法人稅는 企業에서 所管稅務署에 提出한 所得金額申告書에 依하여 課稅하는 이른바 申告課稅가 原則

으로 되어 있고, 企業에서 申告를 하지 아니 하거나 申告를 하였다. 然지라도 稅務官署에서 볼 때 그 申告 內容이 正當 하지 못하다고 認定할 때에 依하여 例外的으로 政府調査決定을 認定하고 있다.

그런데 只今까지의 우리나라 現實은 綠色申告制度가 創設되기 前까지는 申告 決定에 依한 法人稅課税은 그 實例를 찾아 볼 수 없었고 政府調査決定을 爲으로 하여 왔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法人稅調査라 할 때는 政府調査決定을 爲한 調査를 意味하는 것으로 現解되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b. 政府調査決定의 類型과 法人稅 調査

法人稅를 課税함에 있어 政府調査決定을 할 경우에는 企業에서 稅務官署에 所得金額申告를 提出하지 아니 하거나 그 申告가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 行하는 것이라 함은 前述한 非偶然거니와 그 類型에는 다시 實査決定과 認定決定으로 區分되고 있다.

같은거니와 그 類型에는 다시 實査決定과 認定決定으로 區分되고 있다.

実査決定은 法人税調査를 함에 있어 法人이 正當한 所得金額을 算定할 수 있는 帳簿과 証憑書類를 갖추고 있어 當該帳簿과 証憑書類에 依한 調査로써 法人税를 課税하는 時를 말하는 바 이 경우의 法人税調査는,

첫째 1 帳簿과 証憑書類에 不正한 部分이 包含되어 있는지의 與否에 對한 檢査와,

둘째,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로 因한 調整計算 등이 主된 內容으로 되어 있다.

認定決定은 実査決定 때와는 反對로 ① 法人이 帳簿나 証憑書類를 備置하지 않고 있거나 ② 法人이 帳簿 또는 証憑書類의 重要な 部分을 充實하지 않고 있거나 ③ 法人이 備置한 帳簿 또는 証憑書類가 虛偽이거나 重要な 部分에 信憑性에 缺는 경우 등과 같이 正當한 所得計算이 不可能을 때 政府가 一方的으로 所得金額을 認定하여 決定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경우의 法人税調査는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로 因한 調整計算 등은 不必要하고 法人이 正當한 所得計算을 할 수 있는, 即 信憑性있는가 하는 것이 調査의 主

은 内容으로 되어 있다.

政府가 所得金額을 認定 決定하는 方法으로는 外形金額에 標準 所得比率를 乘하여 算定하는 方法과, 同業者 推衡에 依하여 算定하는 方法을 採択하고 있으나 後者의 適用 實例은 찾아 볼 수 없 있다.

C. 綠色申告制度와 申告課稅

1) 一般的인 法人稅申告制度

法人은 所得金額을 各事業年度의 決算確定의 날로 부터 15 日內에, 合併 또는 清算完了의 날로부터 30 日內에 所管稅務署에 申告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註1) 그러나 決算確定의 날은 各 企業體 마다 相異하기 때문에 決算確定의 遲速에 따른 納稅의 不公平을 防止하기 爲하여 稅法은 法人이 各事業年度終了의 날로 부터 45 日內에 該當하는 日을 決算確定 日로 看做하게 되어 있다. (註2) 法人은 該년도 事業年度 終了의 날로 부터 80 日 以內에 所得金額申告를 하여야

(註1) 法人稅法 第 27 條

(註2) 法人稅法 第 27 條 第 3 項

하고, 이 期間을 經過하여 申告를 한 때는 無申告로 取扱되어 加算稅(50%)의 適用을 받게 된다.

所得金額申告書에는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計算書, 及 法人稅法 第9條 乃至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計算한 所得金額明細書等을 添付하도록 하고 있다.

(2) 綠色申告와 書面調査決定

① 綠色申告制度 :

우리나라 法人稅法에 依한 法人稅의 課稅方式은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申告決定方法을 原則으로 하고 政府調査決定方法을 例外로 認定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只今까지의 稅政運營의 實態는 法人稅法의 立法趣旨와는 正反對로 1966. 5. 16 國稅庁訓令 第18號로 綠色申告制度를 採択하기 以前까지는 實地調査에 依한 政府調査決定方法 만을 爲主로 하여 왔고 申告決定方法은 거의 適用하지 않고 있는 實態였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綠色申告制度는 새로운 制度

가 아니고 오히려 現行法人稅法의 理常을 正常化
하는 方便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一般的인 所
得金額申告가 모두 白色인데 反하여 綠色申告는
申告用紙가 綠色이어야 한다는 理由를 갖는다.

法人稅에 關한 綠色申告制度는 1966. 5. 16.
以後에 終了하는 事業年度부터 適用케 되었는데
그 概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綠色申告의 対象 ----- 綠色申告를
할 수 있는 対象은 申告當該事業年度の 直前事業
年度와 直前前等事業年度の 兩事業年度에서 繼續하여
所得金額의 査査決定을 받은 法人을 対象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綠色申告対象이 되는 法人數는 總法
人數 3,213 個中 55%에 該當하는 2,896
個法人에 達하고 있다. (註 3)

綠色申告의 節次 ----- 申告期限과
申告節次는 一般申告와 같으나 (各事業年度の 決算
確定日로 부터 15日 以内) 申告書는 綠色申告
用紙에 依하여야 한다.

(註 3) 資料: 國稅庁 法人稅課.

一般申告와 또한 다른 것은 法人税 所得金額申告書에는 法人税法과 綠色申告要綱(國稅庁訓令 第 16 號)에서 規定한 附屬書類를 반드시 添付提出하여야 한다.

綠色申告書 처리와 書面調査決定 -----

--- 綠色申告를 提出한 企業에 對한 法人税는 所得金額申告書에 添付된 決算書類와 附屬書類에 依하여 書面調査로써 決定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綠色申告對象者가 提出한 綠色申告書에 添付한 書類中 不備의 部分이 있어 書面調査를 하기 困難한 때에는 申告 接受日로부터 10 日以内に 10 日間의 補正期間을 定하여 綠色申告者에게 補正要求를 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綠色申告者로서 申告當該事業年度分の 報告書提出義務(去來資料)를 履行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申告書와 함께 이들 提出하도록 하고 있어 綠色申告者는 所得金額申告 뿐만 아니라 報告書 提出義務도 誠實히 履行을 要求하고 있다.

② 綠色申告制度의 特色과 利害得失
以上에서 1966. 5. 16 國稅庁訓令第 18 號에

依하여 實施하게 된 綠色申告制度와 이에 따른 申告課税制度에 對하여 分析하여 보았다. 이 制度의 成功與否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制度의 特色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綠色申告制度는 既存稅法의 稅두리 안에서 稅務行政의 運營面에서 發展시킨 制度인 것이고

둘째, 綠色申告者는 稅務公務員의 實地 調査를 받지 않고 申告書에 依한 書面 調査로써 課税을 받게 되고

셋째, 申告制度를 嚴格히 要式行爲로 規制하였다는 세가지 點에 그 特色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綠色申告制度의 實施로 因하여 企業經營에 있어서의 利害得失은 그 企業의 事情에 따라 各各 各을 지이나 一般的으로는 다음과 같이 論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企業經營에 있어서 利失 -----
 綠色申告制度가 現行稅法의 稅두리 안에서 發展된 制度 이므로 現行稅制面상의 特惠는 없으나 綠色申告者에 對하여는 法人稅課税에 있어서 稅務公務員

의 實地調査를 省略하는 만큼 企業經營者의 心理
的 負擔을 輕減함과 同時에 實地調査에 消費되
는 人員과 時間이 節約된다 할것이다

물론, 企業經營에 있어서 害矣 -----
綠色申告를 함에 있어서 所得金額申告書以外에
附屬書類 (66件 種目)를 반드시 添付하여야
하는 바 實務上 困難한 點이 많고 또한 綠色申
告時에 脱税의 目的이나 故意로 隱蔽시킨 所得이
아니라 不知情에 漏落시킨 所得等에 對하여는 實
地調査를 거쳐 法人税의 課税을 定할 때 보다
稅務査察時에 檢査될 時は 오히려 加重의 罰則
이 適用될 虞가 있다.

D. 法人税調査 實績分析

法人税調査는 法人税를 課税할 目的으로
實施된다는 것은 前章을 바와 같거니와 그 具體
的인 內容은 企業체에서 申告한 所得金額以外의
脱漏所得金額을 把握하는 데 있다. 附表 (參照才12
表)는 이와 같은 內容을 分析하기 爲하여
1965年 1月 ~ 1965年 11月 (11個月) 間의 課税

実績에 依하여 作成된 表이다. 이 表에 依하면 5,072 社 企業체에서 行한 所得金額申告状況(決算報告)은 欠損法人이 3,331.5 百万 원의 欠損金額을, 利益発生法人이 14,381.2 百万 원의 所得金額(利益金)을 各各 申告함으로써 差減申告 純所得金額은 11,049.7 百万 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申告에 接하여 稅務署에서 法人稅調査를 거쳐서 各法人의 所得金額(혹은 欠損金額)의 決定 狀況을 보면 欠損法人에 對한 欠損金額을 1,926.2 百万 원으로, 課稅法人(利益発生法人)에 對한 所得金額을 16,994.6 百万 원으로 各各 決定함으로써 差減純決定所得金額을 15,068.4 百万 원(A)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稅務公務員의 法人稅調査에서 發覺된 所得金額은 差減純決定所得金額 15,068.4 百万 원(A)에서 差減純申告所得金額 11,049.7 百万 원(B)을 控除한 4,018.7 百万 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差減純決定所得金額 15,068.4 百万 원에 比하면 25.7%에 該當되는바 이것을 다른 말로 表現하면 政府에서 法人稅의 稅收를 確保하는 데 있어서 73.3%는 企業체의 自進申告

에 의하여確保하고 나머지 26.7%는 稅務公務員의 法人稅調査를 通하여 確保되고 있음을 意味한다.

다음에는 法人稅調査의 結果인 脫漏所得金額捕獲額 4,018.7 百萬圓에 對하여 吾의 仔細의 分析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法人稅調査額 4,018.7 百萬圓을 實査決定으로서 3,173.4 百萬圓, 認定決定으로서 845.3 百萬圓을 捕獲하고 있다. 그러나 認定決定으로 인한 捕獲額 845.3 百萬圓은 政府의 所得標準率에 依하여 計算한 所得金額과 申告申告額과의 差額이므로 實地調査에 依하여 發覺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實査決定에 依한 捕獲額 3,173.4 百萬圓만이 稅務公務員의 調査能力에 依한 調査額이라 할 수 있다.

實査決定時의 調査額은 다시 이를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로 인한 調整計算額과 企業체에서 隱蔽한 所得을 發覺한 金額의 두가지 類型으로 分析할 수 있다. 前者에 對한 것이 別表(參照才Ⅱ-乙表)의 (1)~(5)에 掲記한 것이며 (2,361.9 百萬圓) 后者에 對한 것이 別表(參照才Ⅱ-1表)(6)에 掲記한 811.4 百萬圓이다. 따라서

(第Ⅱ-1表)

法人税調査実績分析表

(単位 百万円)

区 分	分	税務署決定分		可税庁決定分		計		備 考
		所得金額	構成比	所得額	構成比	所得額	構成比	
法人数	欠損決定法人数	682	13.7	11	14.0	693	13.8	平成28年12月 間月 課税実績 概算調査
	課税法人数	4,311	86.3	68	86.0	4,379	86.2	
	計	4,993	100%	79	100%	5,072	100%	
決定 所得金額	欠損金額	1,233.9		692.3		1,926.2		
	課税所得金額	12,257.3		4,737.3		16,994.6		
	差減額 A	11,023.4	100%	4,645.0	100%	15,668.4	100%	
申告 所得金額	欠損申告金額	2,318.3		1,013.2		3,331.5		
	所得金額 申告額	10,238.7		4,142.5		14,381.2		
	差減額 B	7,920.4	77.8%	3,129.3	77.3	11,049.7	77.8%	
法人税 調査額 明細 (A-B)	1. 実査決定時	2,257.7	20.6	915.7	22.7	3,173.4	21.6	
	1. 法10條1項1号(法人税金)	292.2	(2.6)	67.1	(1.6)	359.3	(2.4)	
	(2) 法10條1項3号	381.5	(3.4)	92.1	(2.2)	473.6	(3.1)	
	(3) 法10條1項4号(減価償却)	473.5	(4.3)	327.3	(8.1)	800.8	(5.3)	
	(4) 法10條1項5号(業務用関税等)	79.3	(0.7)	8.5	(0.2)	87.8	(0.6)	
	(5) 法18條(行為計算否認)	428.0	(3.8)	212.4	(5.2)	640.4	(4.2)	
	(6) 其他	-						
	益金加算額	2,103.1		727.9		2,831.0		
	損金追認額	1,500		519.6		2,019.6		
	差 減 額	603.1	(5.5)	208.3	(5.1)	811.4	(5.4)	
	2. 認定決定時	845.3	7.6			845.3	5.6	
	合 計	3,103.0	28.2	915.7	(22.7)	4,018.7	26.7	

稅務官署에서 볼때 稅務公務員에게 바람직한 法人
 稅調査는 后者에 該当하는 法人稅總査額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成果를 올렸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65. 7 ~ 1965. 11까지의 成果는
 811.4百萬元에 不遜하며 이것은 差減純決算所得金
 額 15,068.4百萬元에 比하면 5.4%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法人稅의 平均稅率을
 30%로 하여 法人稅額으로 計算하면 243.4百
 萬元) 다시 말하면 法人稅의 稅收를 確保하는 데
 있어서 稅務公務員의 바람직한 法人稅總査의 役割
 은 5.4% 밖에 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느끼지는 것은 綠色申告制度의 妥當性이
 認定된다는 것이다

4. 稅務查察

2. 租稅刑罰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써 法人稅를 通脫한 者 에게는 租稅犯處罰法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通脫稅額을 追徵함은 勿論 三年以下의 懲役 또는 通脫稅額의 2倍에 相當하는 罰金刑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租稅犯에 關한 處罰規定에 依하여 國稅序長, 地方國稅序長 및 稅務署長 에게는 租稅犯 處罰節次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處罰에 相當하는 金額 沒收 또는 沒收에 相當하는 物品, 追徵金에 相當하는 金額과 喜類送達押收物件의 運搬 保管에 要하는 費用을 指定한 場所에 納付할 것을 通告하는 通告處分權과 犯罪者가 通告대로 履行할 實力이 없다고 認定되는 때 또는 정상이 懲役刑에 處罰 것으로 思料되는 때에는 通告處分을 거치지 아니하고 即時 沒收할 수 있는 權限 推이 賦與되어 있다. 이러한 法的인 뒷받침 아래 稅務機關 (國稅序, 地方國稅序, 稅務署)에서는 租稅 犯罪事件을 調查處理하고 있는바 이에 隨伴하는

租稅犯則 調査事務를 稅務機關에서는 稅務査察 또는 査察事務라고 稱하고 있다.

稅務査察에 關한 組織을 보면 國稅庁에는 調査局에 査察課를 두고 있으며 地方國稅庁과 稅務署에 있어서는 各各 調査課에 査察課를 두고 있다. 이에 從事하는 總人員은 現在 約 1,000名에 達하고 있다.

b. 個別査察

1. 業種別綜合調査 (準備調査)

個別査察을 爲한 準備調査로서는 一般적으로 業種別綜合調査가 實施된다. 이 調査는 業種別로 相關業體全般에 亘하여 販賣経路에 따라 去來內容을 把握하여 資料를 蒐集함으로써 相互對査하는 方法으로 稅源을 捕捉한다.

2. 個別査察對象者 選定基準

個別査察對象者의 選定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綜合調査의 結果 不符合資料等を 分析評價하여 個別査察對象者를 定한다 (額色申告者에도 適用됨)

② 다음에 該當하는 者는 個別査察을 할 수 있다.

1. 報告者의 提出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綠色申告者에는 不適用)
2. 稅務法의 規定에 依한 帳簿의 設置, 記帳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綠色申告者에는 不適用)
3. 納稅地의 變更 納稅義務者의 名義變更 또는 人格變更이 屢번하여 租稅遁脫의 虞慮가 있는 者 (綠色申告者에는 不適用)
4. 價格의 變動이 甚한 物品을 製造 輸出入販賣 등의 行爲로 適當利益을 取得하였다고 認定되는 者 (綠色申告者에도 適用됨)
5. 各期 또는 事業年度의 原料에 對한 製造生産比率이 同一業種에 屬하는 者의 同一期間의 높은 生産比率 2個乃至 5個의 平均生産比率에 對하여 1 百分의 5 以上の 低下를 者 (綠色申告者에도 適用됨)
6. 各期 또는 各 事業年度의 外幣金額에 對한 所得比率이 同一業種에 屬하는 者의 同一期間의 높은 所得比率 2個乃至 5個의 平均 所得比率

52

에 대하여 工 百分의 20以上이 低下한 者 (綠色申告者에도 適用됨)

③ 租稅犯應罰法 第10條 乃至 第12條의 規定에 適用하는 者에 對하여는 個別査察을 할 수 있다. (綠色申告者에도 適用됨)

④ 前各項에 依하여 個別査察對象者로 定하여진 者과 傍系關係 또는 特殊關係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個別査察을 할 수 있다. (綠色申告者에도 適用됨)

3. 實地 調 査

個別査察에 있어서 實地調査는 去來狀況調査, 生産收率 또는 收支狀況調査 및 資金狀況調査로 區分하여 實施한다.

去來狀況調査는 綜合調査의 資料調査에서 나타난 不適合分에 對하여 課稅漏添分을 究明하고, 生産收率 또는 收支狀況調査는 去來狀況과 生産收率 또는 收支狀況을 調査하여 通脫金額等を 捕捉하고 關係証憑을 蒐集함을 말하고 資金狀況調査는 去來狀況 또는 收支狀況 및 資金狀況을 調査하여 通脫

金額等を 捕捉하고 關係証憑을 蒐集함을 말한다.

C. 機動査察

(1) 機動査察의 対象

原則적으로 綠色申告者以外の 者が 機動査察의 対象이 된다. 그러나 脱税情報内容이 信憑性이 있어 年 500 万円 以上の 租税違脱嫌疑가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綠色申告者도 機動査察의 対象이 된다.

(2) 情報의 区分整理의 調査處理

機動査察을 執行함에 앞서 脱税情報에 對하여는 먼저 다음의 9個種別로 区分하여 分析評價한 後 處理하게 된다.

- ① 直接証憑物件이 添付되었거나 記述되어 證據力을 가졌다고 認定되는 것
- ② 搜索되거나 調査하면 證據捕捉의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고 認定되는 것
- ③ 金融機關 官公署 其他 第3者로 부터 舉証可能하다고 認定되는 것
- ④ 同一業種 또는 同一地域内に 共通적인 性質을

가진 것으로서 不特定多數人이 対象이 된다고 認定되는 것.

③ 秩序記에만 該當된다고 認定되는 것.

④ 推測的인 内容으로서 情報価値가 低박하다고 認定되는 것.

⑤ 租稅犯則既遂時期가 到來되지 않았거나 犯則行爲의 公訴時効가 滿了된 것.

⑥ 財産의 海外逃避와 關聯되어 租稅逃脫의 嫌疑가 있다고 認定되는 것.

⑦ 其他 異例에 屬하는 것으로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것.

脱稅情報을 前述한 바와 같이 区分한 다음에는 그 情報의 種類에 따라 다음과 같이 處理된다.

첫째 第8号 및 第9号 情報은 國稅庁에서 他情報에 優先하여 調査處理하고 둘째 第1号乃至第3号 該當情報로서 極히 輕微한 情報 및 第6号와 7号該當情報은 課稅面 또는 稅務査察에 參考資料로서 活用하고 셋째 第5号該當情報은 稅務署에서 調査處理하고 넷째 其他資料에 關하여는 事務移使에 따라 國稅庁, 地方國稅庁 및 稅務署에

서 各各 調査處理하게 된다. 四つ째 脱税申告者에
 對한 情報 또는 第1号 및 第3号 該當情狀는
 調査의 重複을 避하기 위하여 個別査察에 併合處
 理케 된다.

D. 脱税査察実績分析

다음表 (参照符Ⅱ-3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1 年度의 脱税摘発額은 264,294 千원 이었으나
 其後 漸次 減少되어 1965 年度에 있어서는
 1961 年度의 35% 에 相當하는 92,924 千원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1966 年度에 있어서는 國稅庁의 努力을
 契機로 脱税調査는 보다 強化되어 그 実績은
 1,451,327 千원 (脱税自進申告 포함) 으로서 1960~
 1965 年の 6個年の 合計実績 858,294 千원 보
 도 上り려 증가하고 있으며 1961 年에 對比하면
 5.5 倍에 相當함을 볼 수 있다.

稅務查察実績表^④

(第Ⅱ-3表)

年度別	区 分	追徴金額		罰課金	計
		金額	% ^⑥		
1960 ^①	査 察	41.324	16	3.424	44.748
61 ^①	"	264.294	100	5.906	270.200
62 ^①	"	204.509	77	15.549	220.058
63 ^①	"	144.036	53	103.883	244.919
64 ^②	"	118.182	44	52.742	170.924
65 ^③	"	88.929	33	38.074	127.007
小 計	"	858.274		219.578	1,077.857
1966 ^③	"	155.351		119.854	275.205
	第1次脱税 自進申告	281.746			281.746
	第2次 "	1,014.230			1,014.230
66 小計		1,451.327 ^⑤	549	119.854	1,571.181
合 計		1,606.678		339.432	1,946.110

註① 財務部可稅局：稅政白書 P. 76, 1964

註② 財務部可稅局：稅務統計年報, P. 266, 1965

註③ 國稅庁：1966年度 國政監査資料 P. 164 P. 169, 1966

註④ 本表の 実績は 各種細目を 加した 合計

註⑤ 1966年 査察令は 8月末 現在

註⑥ 比率は 1961年度を 基準として 比率

Ⅲ. 問題點의 規定

第Ⅱ章에서 分析한 바에 依해서 看取할 수 있는 바와 같이 企業에 課稅되는 法人稅는 그 制度面에서 또는 稅務行政面에서 企業經營에 多大한 財政的負擔을 課한 아니라 心理的으로도 큰 威脅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特히 國稅庁新設後로는 從來의 消極的인 賦課調査爲主의 稅務行政에서 보다 強力한 稅務査察爲主의 稅務行政으로 轉換된 後로는 이러한 局面은 보다 加重된 感이 있지도 않다.

이 章에서는 企業經營에 多大한 影響을 미치는 稅務行政이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爲하여 改善되어야 할 方向을 摸索코자 第Ⅱ章에서 分析한 바에 따라 問題點을 豁出하여 要約規定해 보고자 한다.

A. 制度에 關한 問題點

1. 法人實在說稅制의 不合理性

우리나라 法人稅는 徹底한 法人實在說稅制를 採擧하고 있어 企業所得에 對하여 法人稅와 配當所

得稅를 賦課하고 있어 經營者의立場에서는 明白히 二重課稅를 當하고 있다. (II A. 3 參照)

法人實在稅의 特徵은 社會에는 自然人보다도 自然人和 同等한 社會的實在가 嚴然히 存在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法人이란 그 構成員個人을 떠나 獨自的인 存在로 認定하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法人體의 現狀은 어떠한 가를 살펴보자.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法人體란 거의 全部가 公團法人이라는 概念과는 距離가 먼 徹底한 私的社會 즉 個人企業體의 偏數形態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이 妥當할 것이다. 심지어 大企業體까지도 株式이 分散公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經營과 資本이 分離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衆狹의 一體 또는 幾個人의 一體이 集團이 되어 法人體를 構成하고 있어 法人과 그 構成員의 個人은 經濟的으로 獨立은 커녕 오히려 不可分의 一致狀態를 이루고 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事實이다. 우리나라 法人의 經濟的事實은 이와 같이 法人實在說의 概念과는 隔 떨어져 있고 오히려 法人 擬制說이 妥當하다고 할 수 있는데 法人稅

法에서는 유독 이 實在說을 固守하여 企業所得에
적하여 二重課稅를 하고 있음은 큰 矛盾이라 아
니 할 수 없는 것이다.

2. 法人稅率이 너무 높다.

우리나라 法人稅率이 너무 高率이라고 하면 或
疑哉心을 가질런지 모른다.

勿論 美國이나 英國과 같은 先進國 및 日本과
같은 中進國에 비하면 高率이라 할 수 없는 것
은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後進國에
屬하는 東南亞諸國과 比較할 때는 決코 法人稅率
이 낮은 水準이 아니고 오히려 高率의 便에 있
는 것이다.

이에 對한 仔細한 것은 第四章에서 具體적으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爲先 前述한 바와 같은
問題點만을 提起해 두고자 한다.

3. 加算稅制度의 不合理性

첫째 過少申告加算稅와 無申告加算稅에 關하여
-----現行 法人稅法上에서는 納稅義務者인 法人에

계 法人稅稅收確保上 必要한 事項은 모조리 施行 規定으로서 義務를 命하고 (財務諸表公告義務, 所得金額申告義務等) 그 義務違反에 對하여는 第 1次的으로 最高 50% 까지 加算稅를 科하고 있고 또 이와는 別度로 租稅法의 違反에 對한 租稅犯에 關하여는 租稅犯處罰法에 依하여 第2次的으로 罰金 또는 徒刑을 科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稅務査察를 當하지 아니할 때는 問題가 되지 아니하나 稅務査察의 結果 遁脫金額이 摘發되었을 경우 無申告加算稅나 或은 過少申告加算稅 등은 二重的인 處罰의 結果가 되는 矛盾性을 內包하고 있다 이를 具體的으로 例示하면 遁脫한 稅額이 100 萬圓이면 이에 對한 過少申告加算稅(或은 無申告加算稅)가 50 萬圓(50%)이 追加되고 罰課金이 200 萬圓(2倍)으로 合計 350 萬圓을 負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過少申告加算稅率이 諸外國(日本 5%, 美國 5%)(註1)에 比하여 너무 苛酷하다. 아니할 수 없다. 無申告加算稅도 또한 같다(日本 10% 美國 50%~25%)(註2)

(註1) 財務部稅制局: 外國稅制研究資料 P 16, 1966

(註2)

특히 自進納付不履行加算税에 關하여 -----
 現行 自進納付不履行加算税는 自進納付期間보다 遲
 延된 期間에는 關係없이 一日이 遲延되어도 一率
 的으로 10% 를 課하고 있음은 利率을 無視한
 듯이 있어 公平負擔의 見地에서 볼때 不合理하다
 아니할 수 없다.

4. 減免稅制度의 不合理性

現在法人稅法上에서는 經濟政策的目的으로 重要產
 業에 對한 減免稅制度 輸出所得에 對한 減免稅等
 으로 産業發展을 爲한 投資誘引策을 마련하고 있
 기는 하다 (II A.3 參照) 그러나 이와같은 制度
 는 첫째 所得에 對한 減免制度이므로 所得이 있
 는 경우에만 減免을 받을 수 있고 둘째 特定業
 種에 限해서만 認定되고 있으므로 産業發展을 爲
 한 一般的인 投資誘引策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産業發展에 가장 直接的이고 現實적인 投
 資額에 對해서는 稅制上 아무런 恩典을 받지 못
 하고 있는 矛盾性을 內包하고 있다.

5. 稅務會計의 不合理性

稅務會計와 企業會計는 基本的으로 共同 期間損益計算의 原則에 立脚하고 있으나 兩者는 甚한 差異를 보여 企業經營의 合理化에 가장 큰 障礙要素가 되고 있다. (II.A. 4 参照) 即 稅務會計는 企業會計에 對한 是否認計算을 通하여 總益金의 項目은 企業會計의 收益項目보다 相當히 広範圍하게 計上하는데 反하여 總損金項目은 企業會計의 費用科目보다 極端的으로 狹少하게 計上하므로써 結果的으로 稅務會計上의 當期所得金額이라는 것은 企業會計上의 當期純利益보다 지나치게 擴大되게 計算되는 不合理性を 內含하고 있다.

이에 따라 稅務會計의 裁減한 課稅의 結果는 企業經營에 있어서 配當政策을 비롯한 財務政策을 根本的으로 뒤엎고 나아가서는 經營政策全般에까지 큰 蹉跌을 招來하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6. 額色申告制度의 不合理性

額色申告制度는 첫째 稅務行政의 理想이라고 하는 自己賦課納稅制度의 實現을 期할 수 있고 둘째 우리나라 法人稅法의 規定이 申告課稅를 原則으로 하고 있으므로 立法精神에 順應하는 課稅制度를 實現할 수 있고, 셋째 國民의 納稅義務를 納稅義務者 스스로가 誠實히 履行할 수 있는 制度라는 等の 事由로 높이 評價되는 制度라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不合理性を 內包하고 있다.

- ① 法에 據據된 制度가 아니다. …… 現行 額色申告制度는 法에 根據를 둔 制度가 아니라 國稅庁訓令으로 施行하고 있으므로 法の 縛박을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아무런 特典規定이 없이 自進申告納付를 爲한 誘引策이 없다. …… 即 法에 根據를 둔 制度가 아니므로 아무런 特典規定이 없이 公開決算을 通하여 誠實한 申告納稅를 誘引하는 要因이 缺如되어 있다.
- ③ 負擔이 加重될 경우가 發生한다. ……

誠實한 企業체가 故意가 아니고 不知中에 課税所得金額을 漏減하였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與此調査를 通하여 法人稅를 課税받게 되면 當初 課税時에 課税를 받게 되므로써 處罰까지는 免할 수 있을 것이나 綠色申告를 함으로써 書面調査決定을 하게 되면 當初課税를 받을 때 漏減이 되어 後日 稅務査察에 發覺되었을 때는 處罰까지 받지 않으면 안되므로 오히려 財政的負擔만 加重되어 不利한 結果를 招來할 경우가 發生源 數 있을 것이다.

B. 稅務調査에 關한 問題矣

1. 個別査察決定基準의 不合理性

2. 綠色申告者에 對한 不合理性.

個別査察對象選定基準에서 綠色申告者가 除外되는 特惠規定을 보면 ⑦ 報告書提出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⑧ 假貸의 備置記憶義務를 不履行할 때 ⑨ 納稅地의 變更, 納稅義務者의 名義變更 또는 人格變更이 頻繁하여 租稅遁脫의 憂慮가 있을 (註1) 때의 세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綠色申告者의 場合は 別로 2年間 繼續하여 査査決定을 받

(註1) 査察事務運營要綱 第 24 條 第 2 項

은 誠實한 納稅義務者를 対象으로 하고 있으므로
 綠色申告에 있어서는 前記한 바와 같은 경우가
 現實적으로 發生한다고는 期待할 수 있으므로 이
 러한 規定은 實地에 있어 無意味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있다.

다음으로 ㉠ 價格의 變動이 甚하여 適當利得을
 取하였다고 認定될 때 ㉡ 原料에 對한 製品生産
 比率이 同業者의 平均生産比率에 對하여 5% 以上
 上 低下할 때 ㉢ 外形金額에 對한 所得比率이
 同業者보다 20% 以上 低下할 때 등의 경우는
 綠色申告者도 一般申告者와 똑같이 稅務査察의 対
 象이 되고 있다. (註 2) 그런데 前記한 바와 같
 은 세가지의 경우는 綠色申告에 依한 申告課稅가
 終了된 後에 만이 認知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綠色申告를 稅務署가 接受하면 벌써 그申告書에
 依하여 能히 前記와 같은 査察基準에 該當되는지
 의 興否가 判別될 수 있는 性質인 것이다. 그렇
 세도 不拘하고 前述한 바와 같은 事實을 알면서
 도 綠色申告者라 하여 書面調査만으로서 當初課稅
 (註 2) 査察事務運營要綱第 24 條 第 5 項

行爲를 끝마치고 租稅犯則의 既遂時時期(納稅告知의 納稅期限이 滿了된 때)가 完了된 後에 이것을 稅務査察로 다룬다면 綠色申告란 納稅者를 爲한 制度가 아니라 納稅義務者를 加重處罰하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脫稅嫌疑가 있다 하더라도 當初課稅때 拘獲된 脫漏所得에 對하여는 現行法上 租稅犯이 成立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綠色申告에 對한 前記한 바와 같은 査察基準은 不合理하다 아니할 수 없다.

b. 所得比率에 關한 選定方法의 不合理性

各 事業年度의 外移金額에 對한 所得比率이 同一業種에 屬하는 者의 同一期間의 높은 所得比率에 對하여 그 百分之 二十以上이 低下한 때는 綠色申告者나 或은 綠色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를 莫論하고 査察對象이 된다(II.B.2參照)

只今까지 稅務機關에서 査察對象者를 選定할 때는 그 大部分이 이 基準에 依하여 選定하여 왔음을 留意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稅務計算에 있어서 所得比率이라 함은 經營學

의 純利益率에 相當하는데 純利益率이 同一業種의 他法人보다 적은은 稅務査察的 觀點에서는 脱稅의 嫌疑가 있다고 推定하는 것은 外觀上 一應은 納得이 關涉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經濟學的으로 考察해 보자 企業經營에 所要된 費用을 固定費와 變動費로 区分하여 製造工場의 例를 들어보면 生産量에 依한 收益이 ㉠ 變動費는 補填하였으나 固定費까지는 補填하지 못하였을 때 ㉡ 變動費와 固定費를 齊우 補填하였을 때 ㉢ 變動費와 固定費를 越等히 超過하였을 때에 따라서 賣出額이 同一하다 하더라도 그 所得比率은 ㉠의 境遇는 缺損, ㉡의 境遇는 所得이 있다 하더라도 그 比率이 極히 低을 것이고 ㉢의 境遇는 所得比率이 大端히 高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各 企業의 固定費의 規模와 Capacity에 對한 依業効率을 考慮치 않고 單純히 純利益率이 적다는 것만으로 一律적으로 査察對象으로 指定한다는 것은 甚히 不合理하다. 아니할 수 없다. 즉 企業이 아무리 正直하고 誠實하게 記帳을 하고 申告를 하였다 하더라도 經營成績이 損益分岐點以下이

지나 또는 損益分岐點을 조금밖에 超過하지 못하였을 때는 언제나 雪上加霜格으로 租稅犯則嫌疑者로 取扱을 당하여 稅務查察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不合理한 結論이 나온다.

2. 稅務調查方法의 不合理性

稅務調查는 單純히 正當한 課稅標準額을 捕捉하여 課稅만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稅調查와 法人稅의 納付期限이 滿了되므로써 租稅犯則의 既遂時期가 滿了된 後 租稅犯則事件의 調查處理를 爲한 稅務查察로 區分할 수 있고, 이와 같은 稅務調查는 企業의 眞實한 所得을 追求하는 것이 그 調查內容으로 되어 있다 함은 第二章에서 分析한 바와 같다.

그런데 過然 法人稅調查는 어떤 方法으로 調查를 하고 稅務查察은 어떤 方法으로 調查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첫째 法人稅調查에 있어서는 現行 法令上에서나 取扱通牒 便覽等에서 明白히 規定된 바를 찾아볼 수 있다. 要컨데 法人稅調查는 稅務公務員 各個

人的知識과 經驗에 依存하여 無原則하게 調査를 하고 있는 不合理性을 엿볼 수 있다. 이 結果 課税의 成果는 完全히 稅務公務員 各 個人의 能力에 依存하고 있어 所謂 制度中心의 調査가 아니라 人中心의 調査制度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稅務査察은 法人稅調査方法보다는 稅務적이어 있다. 즉 個別査察은 業種別綜合調査와 準備調査를 통해서 먼저 企業体相互間의 去來資料를 査察한 後 그 不符合狀況에 關한 情報을 얻은 다음에 이것을 基礎로 하여 实地調査에 臨하고 있다. (II B. 2. 參照) 实地調査는 去來狀況調査 生産收率 또는 收支狀況調査 및 資金狀況調査로 区分하여 實施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註1)

그러나 ①去來狀況調査는 “綜合調査의 資料對照에서 나타난 不符合分에 對하여 課税漏減分을 究明한다. (註2) 고 하여 調査方法을 具體的으로 明示하고 있으나, ④其他의 調査方法은 “生産收率 또는 收支狀況調査는 去來狀況과 生産收率 또는

(註1) 査察事務運營要綱 第 25 條

(註2) 査察事務運營要綱 第 26 條

收支狀況을 調査하여 通脫金額等を 捕提하고 關係
証憑을 蒐集한다. (註3)

資金狀況調査는 去來狀況 生産收率 乃至 收支狀
況 및 資金狀況을 調査하여 通脫金額等を 捕提하고
關係証憑을 蒐集한다. (註4)

每과 같이 抽象적인 調査方法만을 提示하였을뿐
具體적인 調査方法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稅務査察도 業種別綜合調査
의 去來狀況調査단이 客觀化된 하나의 調査方法이
라는 提議 論이 評價하지만 其他의 調査方法은
調査方法을 보다 具體化시키지 못하여 法人稅調査
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稅務公務員의 個人能力에
期待할 수 밖에 없는 이론上 尙殘 中心의 調査
라고 하는 不合理性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 以上을 다시 綜合되 보면 稅務調査에는
稅務調査에 關한 基本準則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여 아직도 非科學的이고 原始的인 調査方法의
水準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註3) 査察事務進捗要綱 27條

(註4) 査察事務進捗要綱 28條

3. 稅務調査를 統制하는 組織的이며 制度的인 管理制度의 不備

稅務調査方法이 아직까지 科學的인 調査方法으로 具體化되어 있지 않다 함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또한 稅務調査를 効果的으로 統制하는 組織的이며 制度的인 管理制度가 不備되어 있다. 따라서 稅務調査를 하여도 그것을 評價할 前提가 되는 事前に 決定된 調査基準이 있기 때문에 法人稅調査가 어느 程度 徹底히 잘 된 것인가? 잘 못되었다면 어느 程度 어느 部門에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測定할 方法이 없는 것이다 이 것은 또 企業體에서 申告한 所得金額을 全面審査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稅務官署에서 稅務調査의 統制制度가 아직까지 組織的이고 制度化된 것은 아니나 經濟學的으로 볼 때 구태여 이와 비슷한 制度의 구실을 한 것을 찾아 본다면 所得標準率에 依한 統制制度라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 稅務官署에서는 所得比率(當期純利益率)이 높으면 稅務調査가 잘 된

것이고 所得比率이 낮으면 稅務調査가 잘 못된 것으로 認定하여 稅務査察對象者로 指定하는 등의 措置를 取하고 있었다. 이 以外에 1966. 6. 17 에 國稅庁에서 査察事務運営要綱을 制定할 때에 비로소 原料에 對한 製品의 生産比率이 낮으면 査察對象으로 指定한다는 規定이 新設 되었으므로 原料의 生産性에 依하여 稅務査察이 相當히 繼續될 것으로 期待되나 아직까지는 그 以上の 研究結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所得課課率에 依하여 稅務調査를 課稅하는 것은 좋은 方法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서는 너무나도 不合理하다는 것은 前項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4. 稅務調査의 重複性

法人稅는 額定申告者에 對하여는 그 申告額의 書面調査로서, 其他 一般的인 所得金額의 申告者나 或은 兼申告者에 對하여는 書面調査와 实地調査를 거쳐 課稅하게 된다. 즉 法人稅는 企業體에서 稅務官署에 申告한 所得金額에 拘得되어 會社申告所

得金額대로 課税되는 것이 아니라 實地課税는 会社申告所得金額과는 別途로 稅務官署의 独自の 職權에 依하여 稅務公務員의 独立的인 調査로서 課税하게 된다. 따라서 租稅犯處罰法 第 10 條 1 의 第 3 号의 規定에 依하여 法人稅에 關한 租稅犯則의 既遂時期는 稅務署에서 發行한 納稅告知書의 納付期限이 經過한 때인 것이므로 企業體의 脱稅에 關한 責任을 論한다면,

첫째 企業體에서 藏匿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데 對한 企業主의 責任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둘째는 法人稅를 調査決定할 權限이 賦與되어 있는 稅務官署의 從事員 即 稅務公務員이 法人稅調査의 完壁을 期하지 못하였던 責任도 免할 筈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企業體에서 不藏匿한 申告를 하였거나 或은 捏造的으로 申告自体를 아니한 경우에도 稅務公務員이 法人稅 調査를 徹底하여 그 調査의 完壁을 期하므로써 처음부터 脱漏所得金額이 하나도 없이 課稅의 完壁을 期하였을 경우에는 企業體에서 아무리 脱稅를 意圖하였다 하더라도 脱稅를 할 수 없는 것이며

同時에 脫稅犯이 成立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法人稅調査(書面調査나 突地調査를 不問한다) 時에 있어서 脫漏所得金額이 있음을 知悉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默認하고 法人稅를 課稅함으로써 成立된 脫稅에 對한 責任은 企業主보다 오히려 稅務官署自体에 責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現狀은 一段 稅務官署에서 法人稅調査를 지체 調査決定이 完了된 後에도 脫稅情報가 있거나 (找對査察을 한다) 或은 脫稅가 있다고 外觀적으로 推定되는 경우(當初課稅가 所得比率이 낮을 때 或은 原料에 對한 製品生産比率이 낮을 때는 個別査察을 한다.) 에는 稅務査察을 施行하여 企業체를 處罰하고 있다. 明白한 脫稅情報가 있어 稅務査察을 하는 것도 現行 稅制上 不合理性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理解가 되나 前述한 바와 같이 脫稅에 關한 明白한 情報도 없이 무죄대고 當初의 課稅가 所得比率이 낮든가 原料의 收率이 낮든가 하는 外觀上的 推定만으로 企業체에 對하여 稅務

査察을 하는 것은 企業體의 立場으로 볼 때는
 稅務調査를 二重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稅務官署의 立
 場으로 볼 때는 對象撞着된 矛盾性을 表現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IV. 稅務行政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方向

民主主義國家에서 納稅는 國民의 義務이므로 賦稅는 法에 依하여 處罰 받기에 앞서 納稅倫理觀의 立場에서도 國民의 指彈을 받아야 하는 것은 當然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法人稅는 企業經營에 선제나 그림자처럼 쫓따라 다니면서 그 財政的負擔面 時間的消費 心理的苦痛等を 道해서 陰으로 陽으로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하고 있어 그릇된 法人稅制度는 크게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阻害하고 작게는 企業經營을 侵害하게 되는 要因이 되는 것이므로 法人稅課徵制度야말로 合理的인 綜合經營政策樹立에 있어서는 第1位로 考慮되지 아니하면 아니될 重要한 問題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일찌기 拙述의 有名한 財政學者 “와그나아”가 그의 租稅原則에서 財政政策上의 原則도 重要視 하겠지만 國民經濟上의 原則도 그의

못지않게 重要視 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經濟學的立場에서 보더라도 至極히 妥當한 租稅原則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爲하여 그리고 또 政府의 財政需要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기 爲하여 稅務行政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方向을 다음에 提示하고자 한다.

A. 法人稅課稅制度의 改善

1 法人擬制課稅制로의 轉換

우리나라 法人은 大部分 同族會社이고 企業經營面에서도 資本과 經營이 分離되지 않고 個人事業體와 別로 다른 處이 없으므로 法人稅課稅制度를 法人擬制課稅制로 轉換할 것이 要望된다. 즉 現行配當利子所得에 對한 課稅制度를 再調整하여 二重課稅의 弊端을 止揚함이 妥當하다.

現行配當利子所得에 對한 課稅制度를 再調整하는 方法으로는 첫째 額上配當課稅制를 採択함으로서 實質적으로 法人稅를 徵하고 個人事業과 똑같이 所得稅만 課稅하는 方法 둘째 法人稅를 引上하고 配當

에 처하여는 課稅하지 아니하는 方法 設제 政府投資企業 또는 株式公募法人은 公開法人으로 하고 其他는 非公開法人으로 하여 公開法人의 稅率을 非公開法人의 稅率보다 配當所得에 對한 稅率(12%) 만큼 引下하여 公開法人에 처하여서는 配當利子所得稅를 課稅하고 非公開法人에는 配當에 對한 所得稅를 排除함으로서 二重課稅를 最小限度로 縮小하는 方法 특히 方案이 模索될 수 있으나 設제의 方法이 우리나라의 實情에 가장 適合하다고 생각된다.

※ 參考 (財務部稅制局: 外國稅制研究資料 p. 6
1966)

① 外國의 例, 日本, 配當利子所得에 對한 20% 控除

美國, 配當利子所得에 對한 8
100 控除

② 우리나라 實在說 (配當利子所得稅 12% 課稅)

2. 稅率의 引下의 調整

公開法人과 非公開法人에 對한 稅率은 差等稅率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公開法人에 限하여 配當利子所得稅를 課稅하는 경우 稅負擔의 均衡을 爲해서도 必要한 措置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 公開法人의 育成을 爲해서도 必要한 政策手段이라 하지 아니 할수 없다. 따라서 公開法人에 對한 稅率은 적어도 配當利子所得稅率(12%) 만큼은 非公開法人보다 낮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 強調하고 다음에는 우리나라 法人稅率의 一般的인 構造를 살펴보기로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法人稅率은 3階階(百萬圓以下 20% 百萬圓초과 30% 5百萬圓초과 35%)의 累進稅率로 構成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稅率構造를 諸外國과 比較하여 보면 다음 參考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英國、美國과 같은 先進國, 日本과 같은 中進國家에 比하면 多少 低率임을 알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事情과 類似한 東南亞諸國과 比較하면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高率이라 하지 아니 할수 없다. 特別 自由中國의 그것과 比較하면 2倍以上의 高率임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現象下에서 課稅標準의 現實化를 期할
다는 것은 본 企業의 例證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稅率構造를 泰國의
稅率構造와 같이 :

(5百萬元 以下 20%)
(5百萬元 초과 25%)의 二段階稅率로

改正하는 것이 妥當한 것으로 보았다.

※ 參 考 (財務部稅制局: 外國稅制研究資料

P. 8, 1966

① 우리나라 百萬元以下 20%

百萬元 초과 30%

五百萬元 초과 35%

② 日本 35% 資本金 1億以下 28%

同族会社 超過留保 10~20% 加算

③ 美國

本稅率 22% \$25,000 以上 附加稅 26%

④ 英國 標準稅率 41.25%

⑤ 泰國

50萬 BAHT以下 15% (U.S. \$ 20.83 BANT)

50萬 " 초과 20%

100萬 " " 25%

⑥ 比 律 賓

10萬 比索以下 22% (U.S. \$ 39 比索)

10萬 " 초과 30%

⑦ 自由中國

5萬 NT 以下 6% (U.S. \$ 40 NT)

10萬 " 초과 18%

3. 加算稅率의 引下와 調整

法人에게 該當한 所得金額申告納付를 要求하기
爲하여 法人稅法에서는

① 裁記帳無申告加算稅 (50%)

② 過少申告加算稅 (50%)

③ 認定課稅加算稅 (10%)

④ 裁納付加算稅 (10%)

⑤ 裁公告加算稅 (20%)

等의 加算稅를 課하게 하고 있다. 以下의 各款은 이미 言及
한 바와 같다. (II. A. 3 參照)

加算税制度는 諸外國에서도 採用하고 있는 바 兼
申告加算税에 對한 諸外國의 例를 들어보면 參考
表와 같이 日本(10%) 美國(5~25%)로 되어
있고 過少申告加算税의 경우를 들어보면 日本(5%)
美國(5%)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上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첫째 財務諸表를 公告하지 아니 하였으면 20%
둘째 그 申告內容이 不誠實하여 認定課税를 할 때
는 또 10%를 셋째 그 申告金額에 漏落된 것에
對하여는 그 漏落된 所得金額에 對한 稅
額의 50%를 各々加算하게 되므로써 不誠實히 記
帳을 하고 所得金額申告를 하지 아니할 때 對한
하나의 弊害에 關하여 二重三重으로 加算税를 課
税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과 同時에 그 率이
外國에 比하여 적어도 10倍以上이 高率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誠實한 公開決算을 促進하기 爲하여는
財務諸表無公告加算税(20%)와 認定課税加算税(10
%)制度가 있으므로 現行의 兼申告加算税의 過少
申告加算税는 이를 各々 10%로 引下함이 妥當하

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에 延納付加算稅에서 보면 延納하여야 할 期間을 經過한 延納付期間과는 關係없이 一律적으로 10%로 되어 있음은 너무나 不公平한 點이 있으므로 延納付期間에 相應하는 利子計算에 依한 加算稅를 課함이 必要하다고 본다.

※ 参 考 (財務部稅制局: 外國稅制研究資料, p. 16
1966.)

① 우리나라.

延納無申告加算稅	50%	또는 外形의 $\frac{3}{1,000}$
過少申告	50%	
認定課稅	10%	
延納付	10%	
無公告	20%	또는 外形의 $\frac{3}{1,000}$

② 日 本

無申告加算稅	10%
過少申告	5%
延滞稅日還	2錢
重加算稅	30%

⑤ 美 國

衆申告加算稅	5% ~ 25%
利子稅	6%
遺小申告	5%
重加算稅	50%

4. 投資控除制度의 新設

重要産業에 對한 保護育成策으로서 重減免事業에 對하여는 6年間 輕減免事業에 對하여는 4年間에 걸쳐 法人稅를 輕減하고 있는 외에 外資獲得所得에 對하여는 50%를 輕減하는 制度를 採択하고 있으나 이러한 制度가 間接的으로는 投資를 促進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直接的으로는 모든 企業에 公平히 投資資金의 調達에 크게 功獻 하있다고는 할 수 없다. 企業擴張을 爲한 새로운 投資는 增資나 他人資本에 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既往의 運轉資金을 輕用하게 됨으로서 運轉資金의 枯竭로 企業經營을 危機에 봉착케 하는 例가 許多한 것이므로 投資資本에 對하여는 租稅를 輕減하여 주는 이른바 投資控除制度를 稅制上 採択함이 必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制度의 效果는 企業經營面에서는 投資資金의 内部調達策으로서 有用할 뿐만 아니라 國民經濟的으로는 投資를 促進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制度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投資控除率에 對해서는 投資金額에 對한 稅額扣除額의 50%를 輕減하여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過去의 施設積立金減免率 50%)

5. 外國稅額控除制度의 新設

우리나라의 法人企業도 激次 海外로 發展하고 있는 이 때 海外의 營業活動에 關하여 그 當事者國의 法律에 依하여 그 나라에 納稅를 할 것은 明白한 事實인데 同一所得에 對하여 國內에서 課稅하고, 또한 外國에서 課稅를 하게 되면 國際間의 二重課稅가 成立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相手方國家가 우리나라와 二重課稅防止條約을 締結하고 있는 경우에는 問題될 것이 없다. 하겠으나 이와같은 二重課稅防止條約이 締結되어있지 않는 경우에 企業은 二重課稅를 받게 되는 것이다.

國際間의 二重課稅를 止揚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發展을 保護하기 爲하여 外國에서
納付한 內國法人의 稅額은 國內에서 課稅할 때
控除하는 制度가 新設될 것이 要請되는 것이다.

6. 稅務會計上의 總益金範圍의 縮少

2. 資本剩餘金非課稅

1965 年 12 月 20 日의 稅法改正 (法律 1,720 号)
으로 1966 年 1 月 1 日以後에 終了하는 事業年度
으로부터는 資本剩餘金中 株式額面超過額減資差益金
合併差益金 (資産의 評價增으로 因하여 생기는 差
益金은 除外 함다) 資本的 支出을 目的으로 하는
國庫補助金 (66 年以前에도 益金不算入 하였음) 에
對하여도 稅務會計의 總益金計算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하기로 規定을 하고 있다. 그러나
企業會計上의 資本剩餘金은 아직도 課稅對象이 되
고 있는 部分이 많이 있다.

따라서 健全한 企業經營을 爲하여는 企業會計와
稅務會計는 可及的 一致됨이 要請됨으로 다음의
各 資本剩餘金도 非課稅로 하는 것이 要請되는

- (1) 固定資産評價益
- (2) 債務免除益
- (3) 工事負担金
- (4) 保険差益
- (5) 其他資本剩餘金
- (6) 固定資産譲渡益非課税

現在 個人은 固定資産의 譲渡益에 對하여 何等 課税를 課하고 있는데 法人의 경우에만 課税되는 것은 課税上 不公平하므로 法人도 이를 非課税로 함이 必要하다.

7. 稅務會計上 總損金範圍의 擴大

2. 退職給與充當金制度의 容認

勤勞基準法第 28 條의 規定에 依하면 勤勞年數 一年에 對하여 30 日分以上의 平均 賃金을 退職給與金으로 勤勞者에게 支給하도록 하고 있음과 同時에 이를 積立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退職給與充當金은 稅法의 規定에 依하여 損金으로 認定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制度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勤勞基準法에 定한 退職給與制度를 補充하
고 또한 健全한 企業經營을 爲하여 退職給與充當
金에 相當하는 退職給與金은 損金으로 認定함이
要望되는 것이다.

參 考 (財務部 稅制局: 外國稅制研究資料 p.24, 1966)

外國의 例

美 國. 信託組合에 被雇傭者에게 支給하여
야 할 金額을 支給하였을 경우에
는 損金容認된다.

日 本. 青色申告法人에 限하여 容認된다.

b. 貸損充當金制度의 認定

企業會計原則에서는 貸借對照表原則에서 받을 어
음과 外上賣出金에 相當 貸損充當金은 控除의 形
式으로 이것을 記載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稅務會計에서는 이와같은 貸損充當金으로 整理한
貸損金은 當期의 損金으로 計上하지 않고 稅務
會計에서 貸損金으로 認定되는 것은 現實的으로
貸損이 發生하였으며 또한 이것이 法人稅法施行

規則第8條의 2의 規定에 設當된 것만이 當期의 損金으로 認定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規定은 健全한 企業經理을 阻害하는 要素가 되는 것이므로 稅務會計에서도 賣出價權의 3% 程度는 貸損充當金으로 容認할 것이 要望되는 것이다.

參 考 (財務部稅制局: 外國稅制研究資料, p. 25, 1966)

美 國, 土地貸損이 確定된 때 損金容認함
日 本, 青色申告法人에 限하여 貸損充當損
金容認함.

C. 減價償却資産耐用年數의 現實化

減價償却額을 現實化 시키기 爲한一環策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株式會社의 財産再評價를 實施한 바 있고 또 1965.年12.月2日 資産再評價法을 永久法으로 制定한 後부터는 每二年마다 減價償却資産에 對한 再評價를 할 수 있도록 制度化 하고 있다. (資産再評價法第38條) 그러나 減價償却의 現實化 政策은 이 것만으로서는 不足한 것이다. 卽

우리나라의 減價償却耐用年數表(法人稅法 施行規則 別表)는 旧日帝時代에 制定한 것을 오늘 날까지 踏襲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産業의 發達에 契 따른 改正을 하지 아니하여 漏落된 産業이 있음은 勿論 耐用年數에 있어서는 더무나도 非現實的인 것이 許多하므로 全面的인 改正이 必要하다고 본다.

美國에 있어서는 1962 年에 減價償却資産에 對한 耐用年數를 全面的으로 短縮하였는바 그 結果를 우리나라의 減價償却耐用年數와 比較하면 다음表(第 IV-1 表)와 같이 우리나라의 減價償却耐用年數가 顯著히 短게 策定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第 IV-1 表) 減價償却資産耐用年數比較表

番 号	摘 要	美 國	韓 國
1	建設業	5年	8年
2	製材業	10	20
3	鋸 職 業	14	20
4	塗料製造業	11	15
5	성냥	11	20

番 号	摘 要	美 国	韓 国
6.	正平製造業	14	20
7.	合成樹脂製造業	11	17
8.	製 紙 業	16	20
9.	紙張機製造業	12	16
10.	機械 製造等	12	18
11.	製 粉 等	12	25
12.	製 糖 等	18	25
13.	麥酒製造業	12	25
14.	菓子 및 빵 製造業	12	20
15.	印刷 및 出版業	11	25

財務部税制局：減価資産耐用年比較資料 1966

d. 特別償却範圍의 擴大

現行 우리나라의 特別償却制度로서는

- (1) 50% 以上 輸出商品生産에 使用된 機械設備에 對한 50%의 加速償却
- (2) 各事業年度에 있어서 每月 16時間以上 使用된 機械設備에 對한 20%의 加速償却의 率까지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新規施設에

대한 特別償却制度는 아직까지 未備되어 있다.

新規投資에 對하여 50%의 租稅를 輕減하는 所謂 投資扣除制度를 新設할 것을 앞서 力說하였거니와 이와 併行하여 投資資金에 對한 早期回收를 爲하여 新規投資施設에 對하여는 施設年度부터 5年間은 每年 50%의 特別償却을 할 수 있는 制度가 必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經濟計劃이 五箇年計劃으로 되어 있으므로 投資한 後 5年後에는 投資資金을 大部分 回收하여 國家의 經濟開發計劃에 順應하여 새로운 投資가 可能하게 하기 爲해서이다.

C. 不當行爲計算否認權의 制限

法人稅法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政府이 賦與된 現行의 不當行爲計算否認權은 公團法人과 非公團法人을 莫論하고 모두 適用할 수 있도록 그 範圍를 大端히 넓게 잡고 있다. 그러나 公團法人에게까지 不當行爲計算否認權을 適用한다는 것은 公團法人의 育成과 企業意欲을 阻害하는 큰 要因이 되는 것이므로 稅務官署의 行爲計算否認權은 同族

會社에게만 適用하도록 制限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8. 綠色申告制度의 立法化

現行 綠色申告制度는 稅法上 保障된 制度가 아니므로 綠色申告者에 對하여는 契地調査를 省略함으로써 納稅義務者의 心理的負擔을 輕減하여 준다. 此外의 制度上의 特典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이 制度를 既往에 施行하고 있는 以上 立法化措置를 取하여 적어도 綠色申告者에 限하여 다음의 特典을 받도록 함으로써 綠色申告를 하지 아니하는 者에 比하여 特惠가 있도록 함이 이 制度의 運營上 必要不可缺하다고 본다.

① 重要事業에 對한 減免

② 外資獲得所得에 對한 減免

③ 缺損金의 移越

④ 特別減價償却

⑤ 退職給與充當金容認

⑥ 資損充當金容認

B. 稅務查察運營의 改善.

價格의 變動이 甚한 物品을 製造 輸出入販賣等의 行爲로 適當利得을 取得하였다고 認定하는 者 (查察事務運營要綱 第 24 條 2 項 第 4 号), 各期 또는 各 事業年度의 原料에 對한 製品生産比率이 同一業種에 屬하는 者의 同一期間의 높은 生産比率 二個 乃至 五個의 平均生産比率에 對하여 그 百分의 五以上이 低下한 者 (同上要綱第 24 條第 2 項 5 号), 各期 또는 各 事業年度의 外形金額에 對한 所得比率이 同一業種에 屬하는 者의 同一期間의 높은 所得比率 二個 乃至 五個의 平均所得比率에 對하여 그 百分의 二十以上이 低下한 者 (同上要綱 第 24 條 第 2 項 第 6 号) 는 綠色申告法 入邑을 不問하고 모두 個別查察對象으로 한다는 現行의 查察對象基準은 이를 削除할 것이 要望된다.

왜냐하면 第 Ⅲ章의 問題矣規定에서 具體的으로 言及한 바와같이 外觀的으로는 前記한 바와 같은 경우가 比較的 脫稅의 嫌疑가 많다고 推測할 수

있는 것이나 첫째 前記와 같은 경우는 稅務査察
 段階에서 비로소 認知되는 것이 아니라 法人稅調
 査段階에서 充分히 認知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
 고 法人稅調查時에는 疎忽히 다루고 이것을 稅務
 査察로서 處罰을 爲主로 한다는 것은 不合理한
 것이고 둘째 前記와 같은 경우에 法人稅調查를
 보다 徹底히 하고 거기에서 얻은 資料로서 經濟
 循環過程에 따라 이를 活用하면 處罰을 하지 않
 터라도 課稅目的을 充分히 達成할 수 있고 셋째
 脫稅嫌疑에 關한 具體적인 證據도 없이 外觀上으
 로 脫稅嫌疑가 있을 것 같다는 可能性만을 가지고
 企業체를 搜索하고 帳簿를 押收하여 稅務査察을
 敢行한다는 것은 二重나도 人權侵害과 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當初課稅에 이미 稅務
 官署의 調査를 거쳐 課稅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한 感이 더 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稅務行政은 그 本然의 姿勢인 賦
 課調査를 爲主로 하여야 할 것이고 稅務査察은
 業種別綜合調査나 或은 其他의 情報로서 脫稅嫌疑
 에 關한 具體적인 證據가 어느 程度 蒐集되

것을 때만이 租稅犯則調査에 着手하는 것이 妥當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며, 또한 稅務調査의 重
復性을 避하기 爲해서도 必要하다고 본다.

C. 稅務調査의 科學化

1965 年度의 課稅上에 關한 것을 보면 總
5,035 個의 法人企業에 對하여 課稅한 것 中 52.5%
에 該當하는 2,296 個企業체는 正當한 記帳申告로
認定을 받아 帳簿에 根據한 調査로서 이른바 實
査決定을 받고 있으나 42.5% 에 該當하는 2,139 個
企業체는 帳簿나 或은 証憑書에 信憑性이 없이 正
當한 記帳申告로 認定을 받지 못하여 政府의 一
方的인 決定 즉 이른바 認定決定을 받고 있는
現狀이다. (註 1)

구멍가게도 아닌 企業체에서 하물며 그것이 株
式會社와 같은 法人企業체에서 正當한 帳簿가 不
備하다고 하는 것은 都是詭不成說이고 그와같은 現
狀을 招來케 한 根本原因은 過然어디에 있을까?
그 要因은 各企業체에 따라 特殊한 原因도 있지

(註 1) 國稅庁法人稅課: 業務現況, p. 4, 1966

다는 基本的으로 現行稅制대로 納稅를 한다면 企業經營을 維持해 나갈 수 있어 企業에서 萬不得已 虛偽記帳申告를 한테 基因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稅務官署에서 稅務調査를 科學的으로 履行하지 못하는 可憐한 稅務調査를 奇貨로 脫稅意識이 作用한테 基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科學的인 稅務調査야말로 社會的으로 公平한 課稅를 通해서 社會正義를 實現할 수 있고 企業經營面에서는 經營의 合理化를 促進할 수 있다는 專의 重要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科學的인 稅務調査는 稅務行政의 發展向上을 爲해서도 不可避하지만, 한편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爲한 他律的인 手段으로도 效果的인 方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只今 稅務官署에서 利用하고 있는 稅務調査의 方法에 關하여는 앞서 (IV. B. 4) 言及한 바 있으나 가장 科學的이고 注目할만한 方法은 業種別綜合調査이다 이 調査方法은 各企業체나 國家機關等으로 부터 買入去來와 賣出去來에 關한 各去來內容을 每月 報告받아 (法人은 이러한 報告

書의 提出義務가 부여되어 있다. 法人稅法第 43 條)
 그 去來內容의 하나 하나를 業種別로, 去來者別로
 区分整理한 後 各 業種別로 製造業체를 基點으로
 하여 그 販賣經路에 따라 製造業者 → 卸賣業者 →
 小賣業者 → 消費者와 같은 順位로 立體的으로 그
 去來內容을 相互對查하는 方法에 依하여 稅源을
 追求해 나가는 調查方法인 것이다. 이러한 調查方
 法이 國稅庁發足以前에도 部分的으로 施行되어 오
 기는 하였지만 國稅庁發足以後 國稅庁에서는 보다
 具體적으로 發展시키고 있다. 이 強化하므로써
 이것을 完全히 制度化한 것은 稅務調査를 보다
 科學化시켰다는 뜻에 있어 높이 評價할 만한 功績
 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前述한 바와 같은 業種別綜合調查方法에 依한 去
 來狀況調査의 長處는 具體적이고 根據가 있는 資
 料에 依하여 稅務調査를 遂行한다는 데 있어 보다
 科學적인 調查方法이라 하는 것은 再言을 不要하는
 바이나 이것을 좀더 具體적으로 말한다면 販賣經
 路의 基點이 되는 製造業체의 賣出金에 關한
 것은 그 다음의 모든 去來段階에 있어 빠짐없이

税源을 捕捉할 可能性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 調査方法이 内包하고 있는 缺陷을 分析해 보면 製造業에서 原料買入이나 製品生産收率을 脱税시키므로써 製品賣上額을 虚偽記帳하고, 다음으로 都賣商은 製造業者와 共謀하여 買入金額과 賣出金額을 同時에 漏落시키고 그 다음으로 小賣商은 都賣商과 共謀하여 都賣商의 例에서와 같이 買入金額과 賣出金額을 同時에 漏落시키는 方法으로 脱税行爲를 敢行하는 경우, 그리고 製造業者가 自己의 生産品을 直接 消費者에게 競賣하는 경우와 같은 때는 業種別綜合調査단으로서의 아무런 成果를 期待할 수 없다는 短점이 内包되어 있다.

따라서 稅務調査를 보다 科學化 시키는 方法으로는 前述한 業種別綜合調査에 依한 去來狀況調査와 兼行하여 무엇보다 먼저 製造業段階에서 賣出金額을 漏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견제제도의 確立이 必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첫째 製造業의 不正한 記帳申告를 牽制할 수 있고 둘째 製造業이 負擔하고 있는 法人稅額은 總法人稅額의 過半以上 (53.5%)을 占하고 있어 (註2) 製

(註2) 國稅庁法人稅科: 業務現況, p. 31. 1966.

造業에 對한 稅務調査의 強化가 무엇보다 가장
重要할 뿐 아니라 製造業段階에서 陽性化된 稅源
에 關하여는 業種別綜合調査에 依한 去來狀況調査
로써 그 다음 以下의 去來段階에 있어서도 陽性
化될 可能性이 充分히 있어 그 成果面에서 가장
效果的 이라 期待할 수 있고 셋째 只今까지 作業
量과는 關係없이 되어놓고 所得比率이 낮으면 稅
務調査가 잘못된 것이고 所得比率이 多少라도 높
으면 稅務調査가 잘된 것이라고 滿足하는 것과
같이 所得比率의 多寡에 依해서만 稅務調査의 成
果를 評價하는 不合理하고 不完全한 稅務調査의
評價基準을 보다 補完하기 爲한 措置가 된다는
等の 事由로 다음과 같이 經營統制의 概念을 活
用하는 組織的이며 制度的인 稅務調査의 管理制度
를 確立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
음과 같은 諸生産性의 基準値와 收益狀態比率을
調査確立하여 이 基準値에 依하여 稅務調査를 管
理하고 統制하므로써 不良한 企業經理를 事前에
牽制하고 또한 科學的인 稅務調査를 指向해 나가
자는 것이다. 또한 가지 附言할 것은 製造業에 對

한 이와 같은 稅務調査의 管理統制制度는 他의 業種에도 그대로 應用될 수 있으므로 他業種에 對해서는 이를 省略하고자 하는 것이다.

1. 損益分岐點에 依한 稅務調査與 申告所得金額의 統制制度確立

企業의 死活을 左右하는 損益分岐點을 各企業마다 測定하여 法人稅調査의 實地調査를 臨하기에 앞서 事前에 企業의 予想收益을 計算함으로써 稅務公務員의 恣意的인 稅務調査를 效果的으로 統制하고 나아가 企業經理의 歪曲을 防止하자는 것이다.

損益分岐點은 다음의 公式에 依하여

$$X = \frac{F}{1 - \frac{V}{S}} \quad X = \text{損益分岐點의 賣出額}$$

F = 一定期間의 固定費

V = " 變動費

S = " 賣出額

$\frac{V}{S}$ = 變動比率

算定되는 것이므로 이 統制方法을 制度化하기 爲해서는 各企業의 一定期間의 固定費, 賣出額 (또는

栖格) 및 變動費 (또는 單位當變動費)를 知悉 하
여야 한다. 이러한 基準値는 過去実績 또는 實地
調査로서 다음의 書式 (参照第 IV-2 表) 으로 基本
調査表를 作成하여 各企業体別로 카-드化 시키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第 IV-2 表) 損益分岐點調査表

區 分	A 期	B "	C "	備 考
1. 固 定 費	1,000,000			
2. 變 動 費				
總 額	10,000,000			
單 價 當	600			
3. 賣 出 額				
總 額	10,000,000			
單 價 當				
4. 變 動 費 率	60%			$\frac{S}{V}$
5. 單位當限界收益	400			$S - V$
6. 損益分岐點賣出額	2,500,000			$X = \frac{F}{1 - \frac{V}{S}}$
賣 賣 單 價	2,500 ^個			$F \div \text{限界收益}$
7. 豫 想 收 益	3,000,000			$X = S \times (1 - \frac{V}{S}) - F$

이와 같이 損益分岐矣에 依하여 稅務調査를 統制하는 效果는 企業體의 固定費만 算定되면 變動費率이나 限界收益은 當該企業에 實地調査를 하지 않더라도 過去의 實情이나 慣例 物價時勢 他企業과의 比較 業種別綜合調査等에 依하여 客觀的으로 把握할 수 있어 結果적으로 損益分岐矣理論에 依하여 企業의 豫想收支를 豫見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豫想收支額에 依하여 企業이 申告한 所得金額이나 稅務公務員이 調査한 課稅所得을 評價하여 다음과 같은 純利益變動原因分析을 行한다면 理由없이 課稅所得을 詔意的으로 過少計算하는 弊端을 正揚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參照Ⅳ-2.3.4)

純利益變動分析表

(第Ⅳ-3表)

純利益增加의 原因	純利益減少의 原因
A. 收益項目의 增加	A. 收益項目의 減少
1. 賣出額의 增加	1. 賣出額의 減少
2. 營業外收益의 增加	2. 營業外收益의 減少
B. 費用項目의 減少	B. 費用項目의 增加
1. 賣出原價의 減少	1. 賣出原價의 增加

純利益 増加의 原因	純利益 減少의 原因
2. 一般管理費와 販賣費의 減少	2. 一般管理費와 販賣費의 増加
3. 營業外費用의 減少	3. 營業費用의 増加

2. 工場活動의 生産性에 依한 稅務調査의 統制

앞에서 論한 損益分岐理論에 依한 稅務調査의 統制方法은 企業에서 申告한 生産量單位 (或은 產出量) 가 正當하다는 假定下에 그와 같은 生産單位水準에서의 予想收支와 實地調査所得과를 比較하여 統制하는 方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方法이 內包하고 있는 缺陷은 生産量 또는 賣出額은 事實대로 빠짐없이 直接的으로 統制할 수 있다. 따라서 企業이 申告한 賣出額自体가 正當한 것인가 하는 問題點을 效果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方法이 여기에 補充되지 않으면 안될 必要性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賣出額이 正當하느냐의 檢討는 첫째 販賣

單價가 正當한가. 則에 賣出量 또는 生産量이 正當한가 하는 두가지 點을 分析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販賣單價는 現行 實施하고 있는 業種別綜合 調査에 依하여 그 眞否가 容易하게 判別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生産量이 正當한가를 統制하는 方法만을 다음에 言及하고자 한다.

生産量이 正當히 計上되었느냐 하는 것을 調査하기 爲해서는 工場活動의 모든 效率을 測定해 나가는 것이 가장 理想的이라 할 수 있으나 稅務調査는 制限된 人員과 時間內에서 行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生産性(第IV-4表参照)에 關한 基準値를 各 企業別로 또는 各 業種別로 調査 確立하여 이 基準値에 依하여 生産量에 關한 稅務申告나 稅務調査를 統制해 나가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第IV-4表)

生産性調査表

1. 勞動生産性

區 分	工程別	製 品		業種別標準	当社	実績	差 異	
		品名	單位				A-C	B-C
1. 勞動單位 時間當生産量				A	B	C		
2. 生産單位當時間								

2. 設備與機械生產性

設備名	合數	稼動可能時間	稼動時間			能率%	作業量	台時稼働量	標準能力	差異 B-C
			作業	其他	計					
		A	B					C	D	

3. 原材料生產性

製 品		原 材 料		單位原料消耗	業種別標準量	當社 "	差 異	
品 名	生産量	品名	使用量				B-A	C-A
				A	B	C		

이 統制方法의 効果는 損益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가장 中樞的인 要素인 賣出金額과 原料費를 正當히 記帳케 하는데 크게 寄與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3. 經營分析比率에 依한 統制實施

企業의 一般的인 經營狀態를 把握함과 아울러 앞서 採択한 바 있는 損益分岐點과 工場活動의 生産性에 依하여 企業의 稅務申告와 稅務調査를 統制하는 制度를 보다 補強하기 爲하여 比較的 財政狀態가 健全하고 또한 記帳이 正確하다고 認

定되는 企業을 對象으로 하는 標本調査로서 稅務會計에 立脚한 各業種 標準比率을 策定하여 (参照 第 IV-5表) 各 企業의 実績比率과 比較評價하여 그 原因을 糾明해 나가는 方法도 兼하여 活用하였으면 보다 效果的이라 생각된다.

이 問題에 關하여는 韓國銀行에서 發刊되는 “우리나라 企業經營分析”에서 揭記된 比率을 參考로 應用할 수 있겠다 하겠으나 그것은 企業會計를 中心으로 作成된 것이므로, 稅務官署에서 直接的으로 課稅用에 利用할 수 있도록 稅務會計에 立脚하여 가장 記帳이 正確하다고 認定되는 企業을 對象으로 한 標本調査에 依하여 標準이 되는 比率을 作成함이 必要하다고 본다.

(第 IV-5表) 收益狀態調查表

分 析 比 率		業種別 標準 比率	趨 勢		
名 稱	算 式		A 期	B "	C "
製造原価率	$\frac{\text{製造原價}}{\text{賣出額}} \times 100$				
營業費率	$\frac{\text{營業費} + \text{販賣費}}{\text{賣出額}} \times 100$				

分 折 比 率		業 種 別 標 準 率	趨 勢		
名 稱	算 式		A 期	B "	C "
販賣原價率	$\frac{\text{製造原価} + \text{營業費}}{\text{賣出額}} \times 100$				
賣出總利益金	$\frac{\text{賣出額} - \text{賣出原價}}{\text{賣出額}} \times 100$				
營業利益率	$\frac{\text{營業利益}}{\text{賣出額}} \times 100$				
純利益率	$\frac{\text{純利 益}}{\text{賣出額}} \times 100$				
總資本收益率	$\frac{\text{純利 益}}{\text{總 資 本}} \times 100$				
自己資本收益 率	$\frac{\text{純利 益}}{\text{自己資本}} \times 100$				
流動資產收益 率	$\frac{\text{純利 益}}{\text{流動資產}} \times 100$				
固定資產收益 率	$\frac{\text{純利 益}}{\text{固定資產}} \times 100$				
總資本回轉率	$\frac{\text{賣出額}}{\text{總 資 本}}$				
自己資本回轉 率	$\frac{\text{賣出額}}{\text{自己資本}}$				
流動資產回轉率	$\frac{\text{賣出額}}{\text{流動資產}}$				
固定資產 "	$\frac{\text{賣出額}}{\text{固定資產}}$				
固定負債 "	固定資產				

V 結 論

우리나라 企業經營者는 經營合理化에 의해서가 아니라 脫稅나 特惠融資에 依해서 致富하려는 그릇된 생각은 이제 버리고 國家의 政策方向을 正視하고 經營의 合理化를 促求하지 아니하면 안 될 때가 왔다고 본다.

왜냐하면 企業經營의 資本調達과 가장 關係가 깊은 金融政策과 租稅政策方向의 現實을 보기 위하여 먼저 政府의 財政安定計劃執行狀況을 보면 V-1 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 年末의 通貨量은 566 億 원이었으나 1966 年 9 月末現在는 663 億 원으로 膨脹 되므로서 1965 年末에 比해 97 億 원 (17.1%) 이 增加 되었으며 이에 따라 物價面은 1965 年末에 (物價指數 221.2) 比해 1966 年 9 月末現在로 11% (物價指數 245.6) 가 上昇 되어 있다 (參照 第 V-2 表)

財政安定計劃執行実績表

(第V-1表)

区	今	65. 12	66. 3	66. 6	66. 9	A - B	
						増減	%A
1. 公共部門興信限度	A	170	174	120	B 128	△ 42	△ 24.7%
2. 純民間部分興信		266	207	193	137	△ 129	△ 48.5%
3. 肥料計定		118	170	198	203	85	72%
4. 管理企業体預金	⊖	20	18	25	17	△ 3	△ 15%
5. 海外部門		33	54	117	213	180	545.4%
6. 通貨量		566	587	603	663	97	17.1%

資料：財務部：主要事業推進状況，1966. 9月号 P. 5

物 價 指 数 表

(第V-2表)

年 度 別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指 数	1.000	113.2	123.8	149.3	201.1	221.2	245.6
対前年増加率		13.2	9.3	20.6	34.5	10.0	11.0

韓國銀行調査部：調査月報，1966. 10月号

(註1) 1966年度は 9月末 現在値。

그러나 財政安定計劃執行은 國民經濟內의 모든 資金需給關係를 總網羅하여 通貨膨脹을 抑制하고
 티 나아가서는 制限된 國內資金을 國家가 所望하
 는 方向으로 配分하려는 國家資金計劃임으로 그
 財政安定計劃內에는 金融部分의 모든 興信活動뿐만
 아니라 政府의 現金豫算 外換需給計劃 肥料需給計
 劃 등 國內通貨의 增減을 隨伴하는 모든 部門이
 集約되어 있다 그러므로 理想的인 財政安定計劃은
 國民經濟의 安定과 發展을 爲하여 財政, 外換與
 肥料等 金融이 아닌 部門에 있어서는 嚴格히 收
 支均衡이 取하여져 通貨面에 可反的 中立을 지키
 고 流動性의 追加供給은 主로 企業經營의 資本調
 達の 源泉이 되는 金融을 通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所望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第Ⅶ-1表에서 보
 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通貨供給의 部門別 內訳을
 보면 主로 金融과 關係가 있는 部門(肥料部門에
 서 25 億 원, 海外部門에서 120 億 원)에서 通貨가
 激增하고 있는 것을 公共部門에 對한 興信(42 億
 원)과 民間部部門의 純興信(129 億 원)을 大幅
 줄이므로써 全体的으로 過大한 通貨供給을 抑制하

際에 있어 企業經營에 一犬 威脅感까지 주고 있는 現狀인 것이다.

稅收増大策은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에 있어 資本動員策으로 正當化되고 또 그 重要性이 充分히 認定된다 할지라도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經營資本調達의 中樞的인 役割을 하는 金融資金의 供給이 그와 같이 円滑하지 못한 現下 우리나라 輿件下에서의 稅收増大策이란 것은 企業經營에 있어서 重大한 問題矣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一部の 特殊企業體를 除外하고는 우리나라 企業體의 大部分이 金融資金의 供給不足을 脱稅로 補填하므로써 只今까지 企業經營이 維持되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마저 드는 現狀에서 볼 때 稅收増大策이야말로 企業經營에 있어 看過하지 못할 重大한 問題矣인 것이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稅收増大策이란 具體적으로 實現되는 稅務行政 그 中에서도 企業經營과 가장 直接的으로 關係가 깊고 또한 重要な 位置를 占하고 있는 法人稅에 關한 稅務行政을 中心으로

- 企業經營의 合理化에 問題矣이 되고 있는 것을 具體的으로 分析하고 規定하여 稅務行政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方向을 提示하였다. 卽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위해서 먼저 稅務行政에 있어,
- 첫째 稅務制度面부터 改善이 이루어져야 하고
 - 둘째 稅務調査가 科學化 되어야 하고
 - 셋째 稅務查察의 運營이 改善 되어야 한다는 것
- 等을 力說함과 同時에 그 具體的인 改善方案을 提示하여 보았다.

法人稅는 法人의 經營成果의 結果인 純利益에 對하여 課稅되는 이른바 所得稅의 一種이다. 純利益을 對象으로 하여 課稅하는 租稅이나 그 純利益이라고 하는 것이 企業經營者가 獨自的으로 計算하는 意味의 純利益이 아니라 稅務會計가 定하는 바에 따라 또는 所謂 稅務公務員의 自由裁量權의 作用에 따라 計算되는 意味의 純利益인 것이다. 따라서 經營者가 훌륭한 經營政策을 樹立 執行함으로써 좋은 成果를 보아 높은 利子率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法人稅를 納稅함으로써 納稅後의 收益率이 過少하게 된다고 하면 結果的으로

그 經營政策은 훌륭한 經營政策이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法人稅를 빼놓고는 經營
 의 合理化를 論할 수 있는 것이니 稅務行政에
 있어 前錄한 改善方向이 企業經營者에게는 그 重
 要性이 再認識 되고, 稅務當局에서는 하루 速히 이
 를 받아드려 企業經營의 合理化에 이바지 하도록
 努力하여 줄 것을 바라는 마음 懇切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 振 夏： 新工業經營學， 法文社， 1962.
- 金 元 卿： 生產管理의 理論과 實際， 韓國生產性本部， 1961.
- 姜 永 福： 企業診斷， 錦文社， 1963.
- 韓國產業銀行： 企業經營講座教材（第 12 回）， 1965
- 韓國產業銀行： 企業經營講座教材（第 14 回）， 1966.
- 黃一清 外 19 人： 體系經營辭典， 靑丘出版社， 1965
- 財務部公務員訓練所： 法人稅法 1963.
- 凡 A 퍼스그레이드： 韓國의 經濟開發을 爲한 歲入政策 財務部司稅局 1966.
- 韓國稅政新報社： 現行國稅法令集， 1966.
- 大韓財務協會： 財務 1966. 4. 5. 7. 8 月号
- 國 稅 庁： 課稅資料調查事務取扱要綱 1966.
- 國 稅 庁： 稅務查察運營要綱 1966.
- 國 稅 庁： 綠色申告運營要綱 1966
- 國 稅 庁： 國政監査資料 1966
- 韓國銀行： 우리나라 企業原價分析， 1964.
- 財 務 部： 우리나라 金融制度와 政策概觀， 1966

財 務 部 : 税政白書, 1963,

國稅庁法人税課: 業務現況 1966

財務部税制局: 外國税制研究資料 1966

財務部税制局: 1966 年度國政監査政策質疑答弁資料
1966.

増田米治・山辺 考渡辺真一: 生産性入道ブック, ダイヤ
ド社, 1960

H・S テイビズ (訳者: 日本生産性本部生産性研究所):

生産性測定の方法, ダイヤド社 1958.

明星長太郎: 例解税務会計精義, 白桃書房 1958.

三代川正一: 租税計画の研究 税務経理協會 1959,

山口敏正: 会社の税務と経理, 同文館, 1960

下漢愛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Thy W
副 審 李 宗 夏

gar yang yang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西紀 1969年 2月 7日

